

제 2 부 - 품목별 원산지 규정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1 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01			제 1 류 살아 있는 동물	
	01.01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말	
		0101.21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1.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1.30	당나귀	완전생산기준
		01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		살아 있는 소	
			축우(畜牛)	
		0102.21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버팔로	
		0102.31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3		살아 있는 돼지	
		0103.10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기타	
		0103.91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3.92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1.04		살아 있는 면양과 산양	
		0104.10	면양	완전생산기준
		0104.20	산양	완전생산기준
	01.05		살아 있는 가금(家禽)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 · 오리 · 거위 · 칠면조와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중량이 185 그램 이하인 것	
		0105.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12	칠면조	완전생산기준
		0105.13	오리	완전생산기준
		0105.14	거위	완전생산기준
		0105.15	기니아새	완전생산기준
			기타	
		0105.94	닭 [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포유동물	
		0106.11	영장류	완전생산기준
		0106.12	고래와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완전생산기준
		0106.13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 [카멜리대(camelidae)과]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106.14	토끼	완전생산기준
		0106.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20	과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조류	
		0106.31	맹금류	완전생산기준
		0106.32	앵무류[파렛류(parrots) · 패러키트류(parakeets) · 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106.33	타조와 에뮤(emu) [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디아에(Dromaius novaehollandiae)]	완전생산기준
		0106.39	기타	완전생산기준
			곤충류	
		0106.41	벌	완전생산기준
		0106.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2			제 2 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02.01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1.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1.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1.30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2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2.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202.30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203.1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 (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냉동한 것	
		0203.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3.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 (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3.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1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면양의 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4.2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4.23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4.3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면양의 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204.4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4.4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4.43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4.50	산양의 고기	완전생산기준
	02.05	0205.00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 (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6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 노새와 버새의 식용 설육(屑肉) (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10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소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21	혀	완전생산기준
		0206.22	간	완전생산기준
		0206.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6.30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돼지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41	간	완전생산기준
		0206.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6.8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6.9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2.07		제 0105 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 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1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13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14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칠면조의 것	
		0207.24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25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26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27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오리의 것	
		0207.4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207.43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4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5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거위의 것	
		0207.5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3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4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5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60	기니아새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 한다)	
		0208.10	토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30	영장류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40	고래와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5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208.6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 [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 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10	돼지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9.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2.10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돼지고기	
		0210.11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 (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10.12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10.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210.20	쇠고기	완전생산기준
			기타[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포함한다]	
		0210.91	영장류의 것	완전생산기준
		0210.92	고래와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10.93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210.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			제 3 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03.01		활어	
			관상용	
		0301.11	민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3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활어	
		0301.91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와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1.92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완전생산기준
		0301.93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텔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과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완전생산기준
		0301.94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 [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1.95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Thunnus maccoyii)]	완전생산기준
		030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연어과.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11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 (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 (Oncorhynchus apache)와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2.13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 (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 (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 (Oncorhynchus masou)와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완전생산기준
		0302.14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2.1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 과 · 바디대(Bothidae) 과 · 사이노글로시대 (Cynoglossidae) 과 · 솔레이대 (Soleidae) 과 · 스크프탈미대(Scophthalmidae) 과와 시타리대(Citharidae) 과].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21	넙치[레인하르트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Hippoglossus hippoglossus) 와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Hippoglossus stenolepis)]	완전생산기준
		0302.22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Pleuronectes platessa)]	완전생산기준
		0302.23	서대[솔레아(Solea)종]	완전생산기준
		0302.24	터벗(turbot) [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완전생산기준
		030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나 줄무늬 버니토 [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 (Euthynnus(Katsuwonus) pelamis)].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31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 [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	완전생산기준
		0302.3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완전생산기준
		0302.33	가다랑어나 줄무늬 버니토	완전생산기준
		0302.3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2.35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완전생산기준
		0302.36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완전생산기준
		030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 [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콰머 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콰머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콰머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전갱이 [트라커러스(Trachurus)종],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와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4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2.42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2.43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 · 사르디노프스(<i>Sardinops</i>)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nella</i>)종], 브리스링(<i>brisling</i>)이나 스프랫(<i>sprats</i>) [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완전생산기준
		0302.44	고등어[스콥머 스콥브루스(<i>Scomber scombrus</i>) · 스콥머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 · 스콥머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완전생산기준
		0302.45	전갱이[트라커러스(<i>Trachurus</i>)종]	완전생산기준
		0302.46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i>Rachycentron canadum</i>)]	완전생산기준
		0302.4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완전생산기준
			브레그마세로티대(<i>Bregmacerotidae</i>)과 · 유클리티대(<i>Euclichthyidae</i>)과 · 가디대(<i>Gadidae</i>)과 · 마크로우리대(<i>Macrouridae</i>)과 · 멜라노니대(<i>Melanonidae</i>)과 · 메르루치대(<i>Merlucciidae</i>)과 · 모리대(<i>Moridae</i>)과와 무라에놀레피디대(<i>Muraenolepididae</i>)과의 어류.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51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완전생산기준
		0302.5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i>Melanogrammus aeglefinus</i>)]	완전생산기준
		0302.5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i>Pollachius virens</i>)]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2.54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 · 유르피키스(Urophycis)종]	완전생산기준
		0302.55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완전생산기준
		0302.56	블루 화이팅스(blue whittings)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 (Micromesistius poutassou)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 (Micromesistius australis)]	완전생산기준
		0302.59	기타	완전생산기준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 (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텔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 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와 가물치[카나(Channa)종].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7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완전생산기준
		0302.72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 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 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2.73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 종 · 마일로파린 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완전생산기준
		0302.74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완전생산기준
		0302.7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어류.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81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2.82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2.8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 종]	완전생산기준
		0302.84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2.85	돔[스파리대(Spar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2.8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90	간과 어란(魚卵)	완전생산기준
	03.03		냉동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연어과.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3.11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 [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완전생산기준
		0303.12	그 밖의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 (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 (Oncorhynchus masou)와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완전생산기준
		0303.13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3.14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 (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 (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 (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텔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 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와 가물치[카나(Channa) 종].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3.2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 종]	완전생산기준
		0303.24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 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 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3.25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텔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3.26	뱀장어[앙길라(Anguilla) 종]	완전생산기준
		0303.29	기타	완전생산기준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와 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3.31	넙치 [레인하르트우스 히포글러쇼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완전생산기준
		0303.32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완전생산기준
		0303.33	서대[솔레아(Solea)종]	완전생산기준
		0303.34	터벗(turbot) [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완전생산기준
		0303.39	기타	완전생산기준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나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3.41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 [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3.4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완전생산기준
		0303.43	가다랑어나 줄무늬 버니토	완전생산기준
		0303.4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완전생산기준
		0303.45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완전생산기준
		0303.46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완전생산기준
		0303.49	기타	완전생산기준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와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3.5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완전생산기준
		0303.53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 · 사르디노프스(<i>Sardinops</i>)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nella</i>)종], 브리스링(<i>brisling</i>)이나 스프랫(<i>sprats</i>) [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완전생산기준
		0303.54	고등어[스콸버 스콸브루스(<i>Scomber scombrus</i>) · 스콸버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 · 스콸버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완전생산기준
		0303.55	전갱이[트라커러스(<i>Trachurus</i>)종]	완전생산기준
		0303.56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i>Rachycentron canadum</i>)]	완전생산기준
		0303.5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완전생산기준
			브레그마세로티대(<i>Bregmacerotidae</i>)과 · 유클리티티대(<i>Euclichthyidae</i>)과 · 가디대(<i>Gadidae</i>)과 · 마크로우리대(<i>Macrouridae</i>)과 · 멜라노니대(<i>Melanonidae</i>)과 · 메르루치대(<i>Merlucciidae</i>)과 · 모리대(<i>Moridae</i>)과와 무라에놀레피디대(<i>Muraenolepididae</i>)과의 어류.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3.63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완전생산기준
		0303.64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i>Melanogrammus aeglefinus</i>)]	완전생산기준
		0303.65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i>Pollachius virens</i>)]	완전생산기준
		0303.66	민대구[메루키우스(<i>Merluccius</i>)종 · 유르피키스(<i>Urophycis</i>)종]	완전생산기준
		0303.67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i>Theragra chalcogramma</i>)]	완전생산기준
		0303.68	블루 화이팅스(blue whittings)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 (<i>Micromesistius poutassou</i>)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 (<i>Micromesistius australis</i>)]	완전생산기준
		0303.6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어류.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3.81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3.82	가오리와 홍어[라지대(<i>Rajidae</i>)과]	완전생산기준
		0303.8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ostichus</i>) 종]	완전생산기준
		0303.84	농어[디센트라르쿠스(<i>Dicentrarchus</i>) 종]	완전생산기준
		0303.8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3.90	간과 어란(魚卵)	완전생산기준
	03.04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 (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냉장한 것이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텔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와 가물치[카나(Channa)종]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0304.3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완전생산기준
		0304.32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4.33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완전생산기준
		0304.3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어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 (fillet)	
		0304.41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 (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 (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 (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4.42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 (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 (Oncorhynchus apache) 와 웅코링쿠스 크리스소가스터 (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4.43	넙치류[플루로벡티대(Pleuronectidae) 과 · 바디대(Bothidae) 과 · 사이노글로 시대(Cynoglossidae) 과 · 솔레이대 (Soleidae) 과 · 스코프탈미대 (Scophthalmidae) 과와 시타리대(Citharidae) 과]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4.44	브레그마세로티대 (Bregmacerotidae) 과 · 유클리티대 (Euclichthyidae) 과 · 가디대 (Gadidae) 과 · 마크로우리대 (Macrouridae) 과 · 멜라노니대 (Melanonidae) 과 · 메르루치대 (Merlucciidae) 과 · 모리대 (Moridae) 과와 무라에놀레피디대 (Muraenolepididae) 과의 어류	완전생산기준
		0304.45	황새치 [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4.46	이빨고기 [디소스티쿠스 (Dissostichus) 종]	완전생산기준
		0304.4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0304.51	텔라피아 [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 종], 메기 [판가시우스 (Pangasius) 종 · 실루루스 (Silurus) 종 · 클라리아스 (Clarias) 종 · 익타루루스 (Ictalurus) 종], 잉어 [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 종 · 시리누스 (Cirrhinus) 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 [앙귤라 (Anguilla) 종], 나일 퍼치 [라테스 니로티쿠스 (Lates niloticus)] 와 가물치 [카나 (Channa) 종]	완전생산기준
		0304.52	연어과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4.53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o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와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완전생산기준
		0304.5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4.5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4.59	기타	완전생산기준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텔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와 가물치[카나(Channa)종]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6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4.62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 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 종 · 익타루리스(Ictal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4.63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완전생산기준
		0304.69	기타	완전생산기준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 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 (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 (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 (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와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71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완전생산기준
		0304.7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Melanogrammus aeglefinus)]	완전생산기준
		0304.7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Pollachius virens)]	완전생산기준
		0304.74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 · 유르피키스(Urophycis)종]	완전생산기준
		0304.75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완전생산기준
		0304.7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81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 (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 (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 (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4.82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 (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 (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4.83	넙치류[플루로벡티대(Pleuronectidae) 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 시대(Cynoglossidae)과 · 솔레이대 (Soleidae)과 · 스코프탈미대 (Scophthalmidae)과와 시타리대(Citharidae)과]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4.8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4.8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 종]	완전생산기준
		0304.86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4.87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나 줄무늬 버니토 [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 (Euthynnus (Katsuwonus) pelamis)]	완전생산기준
		0304.8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냉동한 것	
		0304.9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4.9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 종]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4.9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 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 (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와 가물치[카나 (Channa)종]	완전생산기준
		0304.94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완전생산기준
		0304.95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 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 acrouro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 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와 무라에놀레피디대 (Muraenolepididae)과의 어류[명태 (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304.9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1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305.20	어류의 간과 어란(魚卵)(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어류의 필레(fillet)(건조하거나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3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텔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와 가물치[카나(Channa)종]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5.32	브레그마세로티대 (Bregmacerotidae) 과 · 유클리티대 (Euclichthyidae) 과 · 가디대 (Gadidae) 과 · 마크로우리대 (Macrouridae) 과 · 멜라노니대 (Melanonidae) 과 · 메르루치대 (Merlucciidae) 과 · 모리대 (Moridae) 과와 무라에놀레피디대 (Muraenolepididae) 과의 어류	완전생산기준
		0305.39	기타	완전생산기준
			훈제한 어류[필레 (fillet)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5.41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 (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 (Oncorhynchus gorbusha) · 웅코링쿠스 케타 (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 (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 (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 (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 (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5.42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 (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5.43	송어[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 · 웅코링쿠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 · 웅코링쿠스 클라키(<i>Oncorhynchus clarki</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i>Oncorhynchus aguabonita</i>) · 웅코링쿠스 길래(<i>Oncorhynchus gilae</i>) · 웅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와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i>Oncorhynchus chrysogaster</i>)]	완전생산기준
		0305.44	텔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종],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종 · 실루루스(<i>Silurus</i>)종 · 클라리아스(<i>Clarias</i>)종 · 익타루루스(<i>Ictalurus</i>)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i>Cyprinus carpio</i>)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i>Carassius carassius</i>)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종 · 시리누스(<i>Cirrhinus</i>)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뱀장어[앙귤라(<i>Anguilla</i>)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와 가물치[카나(<i>Channa</i>)종]	완전생산기준
		0305.49	기타	완전생산기준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5.51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완전생산기준
		0305.59	기타	완전생산기준
			건조하지도 훈제하지도 않은 염장한 어류와 염수장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5.6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5.62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완전생산기준
		0305.63	멸치[엔그로리스(Engraulis)종]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5.64	텔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 종 · 실루루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 (Clarias)종 · 익타루루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Cyprinus carpio) ·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 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와 가물치[카나(Channa)종]	완전생산기준
		0305.69	기타	완전생산기준
			어류의 지느러미 · 머리 · 꼬리 · 위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0305.71	상어 지느러미	완전생산기준
		0305.72	어류의 머리 · 꼬리와 위	완전생산기준
		0305.7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냉동한 것	
		0306.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완전생산기준
		0306.12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완전생산기준
		0306.14	게	완전생산기준
		0306.15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완전생산기준
		0306.16	냉수성(冷水性) 새우류 [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완전생산기준
		0306.17	그 밖의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19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냉동하지 않은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6.21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 · 파누리루스(panulirus)종 · 자수스(Jasus)종]	완전생산기준
		0306.22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완전생산기준
		0306.24	게	완전생산기준
		0306.25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완전생산기준
		0306.26	냉수성(冷水性) 새우류 [판달러스(Pandalus)종 · 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완전생산기준
		0306.27	그 밖의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29	기타[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살아 있는 것 · 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굴	
		0307.1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리비과의 조개[펙텐(Pecten) · 클라미스(Chlamys) · 프라코펙텐(Plac opecten)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307.2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홍합[미틸루스(Mytilus)종 · 페르나(Perna)종]	
		0307.31	살아 있는 것 ·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39	기타	완전생산기준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 · 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 · 세피올라(Sepiola)종]와 오징어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 · 로리고(Loligo)종 · 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 · 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0307.41	살아 있는 것 ·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49	기타	완전생산기준
			문어[옥토퍼스(Octopus)종]	
		0307.51	살아 있는 것 ·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6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클램(clam), 새조개와 피조개 [아르치대(Arcidae)과·아르크티치대 (Arcticidae)과·카르디대(Cardiidae) 과·도나치대(Donacidae)과·히아텔 리대(Hiatellidae)과·마크트리대 (Mactridae)과·메소데스마티대 (Mesodesmatidae)과·마이이대 (Myidae)과·세멜리대(Semelidae)과 ·솔레쿠르티대(Solecurtidae)과· 솔레니대(Solenidae)과·트리다크니대 (Tridacnidae)과와 베네리대(Veneridae)과]	
		0307.7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79	기타	완전생산기준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0307.81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8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7.9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9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8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 · 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 한다)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한다)을 포함한다]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Stichopus japonicus), 홀로투리오이대(Holothurioidea)과]	
		0308.1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8.19	기타	완전생산기준
			성게[스트롱길로센트로투스(Strongylocentrotus)종 · 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Paracentrotus lividus) · 록세치누스 알버스(Loxechinus albus) · 에치치누스 에스쿨렌투스(Echichinus esculentus)]	
		0308.2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8.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8.30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종]	완전생산기준
		0308.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4			제 4 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01.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고 100 분의 6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4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을 초과하고 100 분의 10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5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	완전생산기준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 한다)	
		0402.10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40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402.9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402.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 또는 과일·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3.10	요구르트	완전생산기준
		04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4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5.10	버터	완전생산기준
		0405.2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완전생산기준
		04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4.06		치즈와 커드(curd)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완전생산기준
		0406.2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완전생산기준
		0406.3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406.4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완전생산기준
		0406.90	그 밖의 치즈	완전생산기준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부화용 수정란	
		0407.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완전생산기준
		04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신선란	
		0407.2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완전생산기준
		04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찢은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의 노른자위	
		0408.11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408.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0408.91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408.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9	0409.00	천연꿀	완전생산기준
	04.10	041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05			제 5 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5.01	0501.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2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2.1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5.04	0504.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 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염장한 것·염수장한 것·건조한 것이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 한다)	완전생산기준
	05.05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 (청정·소독이나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5.1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완전생산기준
		05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6		뼈와 혼코어(horn-core) [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6.10	골소(骨素)와 뼈[산(酸)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5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7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 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 발굽·발톱과 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507.10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8	0508.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 (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10	0510.00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 시뵈트(civet)과 사향, 칸대리디즈 (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5.11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 1 류나 제 3 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0511.10	소의 정액	완전생산기준
			기타	
		0511.91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 3 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완전생산기준
		051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				
06			제 6 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06.01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과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제 1212 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0601.1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과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인 것	완전생산기준
		0601.2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과 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완전생산기준
	06.02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	
		0602.1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완전생산기준
		0602.20	수목과 관목(식용 과실이나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3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4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6.03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선한 것	
		0603.11	장미	완전생산기준
		0603.12	카네이션	완전생산기준
		0603.13	난	완전생산기준
		0603.14	국화	완전생산기준
		0603.15	백합[릴리움(Lilium) 중]	완전생산기준
		06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4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풀·이끼·지의(地衣)(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4.20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6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			제 7 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塊莖)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1.10	종자용	완전생산기준
		07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02	0702.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10	양파와 쪽파	완전생산기준
		0703.20	마늘	완전생산기준
		0703.9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완전생산기준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1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완전생산기준
		0704.20	방울다다기 양배추	완전생산기준
		07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 [시커리엄(Cichorium)종]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상추	
		0705.11	결구(結球) 상추	완전생산기준
		0705.19	기타	완전생산기준
			치커리(chicory)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05.21	위트루프 치커리 (Witloof chicory) [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 (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완전생산기준
		0705.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6		당근 · 순무 · 셀러드용 사탕무뿌리 · 선모(仙茅) · 셀러리액(celeriac) ·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10	당근과 순무	완전생산기준
		07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7	0707.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7.08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1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08.20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 (Phaseolus)종]	완전생산기준
		0708.9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완전생산기준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2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완전생산기준
		0709.30	가지(에그플랜트)	완전생산기준
		0709.40	셀러리(celery) [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버섯과 송로(松露)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09.5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09.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9.6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완전생산기준
		0709.70	시금치류	완전생산기준
			기타	
		0709.91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완전생산기준
		0709.92	올리브	완전생산기준
		0709.93	호박, 스쿼시 및 박류 [쿠쿠르비타(Cucurbita)종]	완전생산기준
		0709.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10	감자	완전생산기준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0710.21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10.22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 (Phaseolus)종]	완전생산기준
		0710.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0.30	시금치류	완전생산기준
		0710.40	스위트콘	완전생산기준
		0710.80	그 밖의 채소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10.90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7.11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1.20	올리브	완전생산기준
		0711.40	오이류	완전생산기준
			버섯과 송로(松露)	
		0711.5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11.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1.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부순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20	양파	완전생산기준
			버섯, 목이버섯 [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젤리균류 [트레멜라(Tremella)종]와 송로(松露)	
		0712.3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12.32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완전생산기준
		0712.33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1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2.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조갯 것인지에 상관없다)	
		0713.1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13.2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완전생산기준
			콩[비그나(Vigna)종과 파세러스 (Phaseolus)종]	
		0713.31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L) Hepper)종 또는 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완전생산기준
		0713.32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 olus) 또는 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완전생산기준
		0713.33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 [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	완전생산기준
		0713.34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 또는 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완전생산기준
		0713.35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완전생산기준
		0713.3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13.40	렌즈콩	완전생산기준
		0713.5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떡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 · 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완전생산기준
		0713.6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완전생산기준
		071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4		매니옥(manioc) · 칩뿌리 · 살렘(salep) ·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 · 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와 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 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10	매니옥(manioc) [카사바(cassava)]	완전생산기준
		0714.20	고구마	완전생산기준
		0714.30	얌[디오스코레아(Dioscorea)종]	완전생산기준
		0714.40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종]	완전생산기준
		0714.50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종]	완전생산기준
		071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			제 8 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나 멜론의 껍질	
	08.01		코코넛·브라질너트와 캐슈너트 (cashew nut) (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코코넛	
		0801.11	말린 것	완전생산기준
		0801.12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브라질너트	
		0801.2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2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캐슈너트(cashew nut)	
		0801.3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3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아몬드	
		0802.1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1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헤즐너트(hazelnut)나 필버트(filbert) [코리루스(Corylus)종]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02.2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2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호두	
		0802.3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3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0802.4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4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피스타치오(pistachio)	
		0802.5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5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	
		0802.6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6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70	콜라 너트(kola nut) [콜라(Cola)종]	완전생산기준
		0802.80	빈랑자(areca nut)	완전생산기준
		08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10	플랜틴(plantain)	완전생산기준
		08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04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아보카도 (avocado) · 구아바(guava) · 망고(mango)와 망고스틴(mangosteen)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10	대추야자	완전생산기준
		0804.20	무화과	완전생산기준
		0804.30	파인애플	완전생산기준
		0804.40	아보카도 (avocado)	완전생산기준
		0804.50	구아바(guava) · 망고(mango)와 망고스틴(mangosteen)	완전생산기준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으로 한정한다)	
		0805.10	오렌지	완전생산기준
		0805.20	만다린(mandarins) [탄제린(tangerines)과 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완전생산기준
		0805.4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로 (pomelos)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5.50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 · 시트러스 리머눔(Citrus limonum)], 라임(lime) [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 (Citrus aurantifolia) ·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완전생산기준
		08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06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10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6.20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 [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0807.11	수박	완전생산기준
		08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7.20	포포(papaw) [파파야(papaya)]	완전생산기준
	08.08		사과·배와 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10	사과	완전생산기준
		0808.30	배	완전생산기준
		0808.40	마르멜로(quince)	완전생산기준
	08.09		살구·체리·복숭아[넥타린(nectarine) 을 포함한다]·자두와 슬로(sloe)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10	살구	완전생산기준
			체리	
		0809.21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완전생산기준
		0809.2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09.30	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9.40	자두와 슬로(sloe)	완전생산기준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10	초본류 딸기	완전생산기준
		0810.2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와 로간베리(loganberry)	완전생산기준
		0810.30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완전생산기준
		0810.40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 속의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완전생산기준
		0810.60	두리안(durian)	완전생산기준
		0810.70	감	완전생산기준
		0810.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찢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10	초본류 딸기	완전생산기준
		0811.2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이나 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완전생산기준
		081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12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2.10	체리	완전생산기준
		081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3		건조한 과실(제 0801 호부터 제 0806 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10	살구	완전생산기준
		0813.20	프룬(prune)	완전생산기준
		0813.30	사과	완전생산기준
		0813.40	그 밖의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3.5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8.14	0814.00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			제 9 류 커피·차·마테(maté)와 향신료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1.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완전생산기준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1.22	카페인을 제거한 것	완전생산기준
		09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9.02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902.1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02.2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02.4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완전생산기준
	09.03	0903.00	마테(maté)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9.04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후추	
		0904.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4.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4.21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4.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5		바닐라	
		0905.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5.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6.11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완전생산기준
		0906.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906.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7		정향(丁香)(과실·꽃과 꽃대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907.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7.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8		육두구(肉荳蔻) · 메이스(mace)와 소두구(小荳蔻)	
			육두구(肉荳蔻)	
		0908.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메이스(mace)	
		0908.2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소두구(小荳蔻)	
		0908.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3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9		아니스(anise) · 대회향(大茴香) · 회향(茴香) · 코리앤더(coriander) · 커민(cumin)이나 캐러웨이(caraway)의 씨, 주니퍼(juniper)의 열매	
			코리앤더(coriander)의 씨	
		0909.2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9.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커민(cumin)의 씨	
		0909.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9.3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아니스(anise) · 대회향(大茴香) · 캐러웨이(caraway)나 회향(茴香)의 씨, 주니퍼(juniper)의 열매	
		0909.6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9.6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10		생강 · 사프란(saffron) · 심황[강황(薑黃)] · 타임(thyme) · 월계수 잎 · 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생강	
		0910.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10.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10.20	사프란(saffron)	완전생산기준
		0910.30	심황[강황(薑黃)]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향신료	
		0910.91	혼합물(제 9 류의 주 제 1 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10.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			제 10 류 곡물	
	10.01		밀과 메슬린(meslin)	
			듀럼종 밀(Durum wheat)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001.1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1001.9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2		호밀	
		1002.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3		보리	
		1003.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4		귀리	
		1004.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5		옥수수	
		1005.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6		쌀	
		1006.10	벼	완전생산기준
		1006.20	현미	완전생산기준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006.40	쇄미(broken rice)	완전생산기준
	10.07		수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007.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		메밀 · 밀리트(millet) · 카나리시드 (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1008.10	메밀	완전생산기준
			밀리트(millet)	
		1008.2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8.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30	카나리시드(canary seed)	완전생산기준
		1008.40	포니오(Fonio) [디지털리아(Digitaria)종]	완전생산기준
		1008.50	퀴노아(quinoa) [체노포디움 퀴노아 (Chenopodium quinoa)]	완전생산기준
		1008.60	라이밀(triticale)	완전생산기준
		1008.90	그 밖의 곡물	완전생산기준
11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 (gluten)	
	11.01	1101.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완전생산기준
	11.02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 (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2.20	옥수수가루	완전생산기준
		11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1.03		곡물의 부순 알곡 · 거친 가루와 펠릿 (pellet)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11	밀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103.13	옥수수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3.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3.20	펠릿 (pellet)	완전생산기준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진주 모양인 것 · 얇은 조각 으로 만든 것이나 거칠게 빵은 것 (제 1006 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이 나 잘게 부순 것	
			압착한 것이 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104.12	귀리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4.19	기타 곡물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 진주 모양인 것 ·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이 나 거칠게 빵은 것)	
		1104.22	귀리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4.23	옥수수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4.2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4.30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이 나 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11.05		감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 플레이크(flake) · 알갱이와 펠릿(pellet)	
		1105.10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가루	완전생산기준
		1105.20	플레이크(flake) · 알갱이와 펠릿 (pellet)	완전생산기준
	11.06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 0713 호의 것), 사고(sago) · 뿌리나 괴경(塊莖) (제 0714 호의 것), 제 8 류 물품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가루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106.1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 (제 071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1106.20	사고(sago) · 뿌리나 괴경(塊莖)의 것 (제 0714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1106.30	제 8 류 물품의 것	완전생산기준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7.10	볶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1107.20	볶은 것	완전생산기준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전분	
		1108.11	밀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8.12	옥수수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8.13	감자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8.14	매니옥(manioc) [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8.19	그 밖의 전분	완전생산기준
		1108.20	이눌린(inulin)	완전생산기준
	11.09	1109.00	밀의 글루텐(gluten) (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			제 12 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이나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테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30	종자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	
		1202.4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1202.42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3	1203.00	코프라(copra)	완전생산기준
	12.04	1204.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5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5.1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완전생산기준
		12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6	1206.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10	팜너트(palm nut)와 핵(核)	완전생산기준
			목화씨	
		1207.21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7.30	피마자	완전생산기준
		1207.40	참깨	완전생산기준
		1207.50	겨자씨	완전생산기준
		1207.6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 (Carthamus tinctorius)] 종자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207.70	멜론 종자	완전생산기준
			기타	
		1207.91	양귀비씨	완전생산기준
		1207.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8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08.10	대두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208.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9		과종용 종자 · 과실과 포자(孢子)	
		1209.10	사탕무 종자	완전생산기준
			사료용 식물의 종자	
		1209.21	루우산(lucerne) (알팔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2	클로버 (clover) [트리폴리엄(Trifolium)중]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3	페스큐(fescue)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4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grass) [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5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 · 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완전생산기준
		1209.2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209.3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완전생산기준
			기타	
		1209.91	채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0		홉(hop)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 (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 (lupulin)	
		1210.10	홉(hop) [잘게 부순 것 · 가루 모양이나 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1210.20	홉(hop) [잘게 부순 것 · 가루 모양이나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완전생산기준
	12.11		주로 향료용 · 의료용 · 살충용 · 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 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	
		1211.20	인삼	완전생산기준
		1211.30	코카잎	완전생산기준
		1211.40	양귀비줄기	완전생산기준
		121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 ·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 ·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1212.21	식용	완전생산기준
		121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1212.91	사탕무	완전생산기준
		1212.92	로커스트콩(locust bean) (캐롭)	완전생산기준
		1212.93	사탕수수	완전생산기준
		1212.94	치커리(chicory) 뿌리	완전생산기준
		1212.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3	1213.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2.14		스위드(swede) · 멥골드(mangold) · 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 건초 · 루우산(lucerne) (알팔파) · 클로버 (clover) · 샌포인(sainfoin) · 사료용 케일 (kale) · 루핀(lupine) · 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10	루우산(lucerne) (알팔파) 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완전생산기준
		121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3			제 13 류 락(lac), 검 · 수지 및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1		락(lac), 천연 검 · 수지 · 검 수지와 올레오레진(oleoresin) [예: 발삼(balsam)]	
		1301.20	아라비아 검	완전생산기준
		13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 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 (thickener) (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2.11	아편	완전생산기준
		1302.12	감초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302.13	홉(hop)으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302.19	기타	완전생산기준
		1302.20	펙틴질 · 펙티닝산염(pectinate) 과 펙틴산염(pectate)	완전생산기준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31	한천	완전생산기준
		1302.32		완전생산기준
		130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14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1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 (raffia), 청정 · 표백이나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	
		1401.10	대나무	완전생산기준
		1401.20	등나무	완전생산기준
		14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4.04		다른 곳에서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4.20	면(綿) 린터(linter)	완전생산기준
		14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3 부 동물성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식물성 납(蠟)				
15			제 15 류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 동물성이나 식물성 납(蠟)	
	15.01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 과 가금(家禽)의 지방(제 0209 호나 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1.10	라드(lard)	완전생산기준
		1501.20	그 밖의 돼지의 지방	완전생산기준
		15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5.02		소·면양이나 산양의 지방 (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10	텔로우(tallow)	완전생산기준
		15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5.03	1503.00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 라드유(lardoil) ·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 올레오유(oleo-oil)와 텔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혼합이나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15.04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4.10	어류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완전생산기준
		1504.2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간유(肝油)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04.30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완전생산기준
	15.05	1505.00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15.06	1506.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 한다)	완전생산기준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10	조유(粗油) [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5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8.10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08.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10	버진(virgin)	완전생산기준
		1509.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10	151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1.10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1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나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 한다)	
			해바라기씨유나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1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12.19	기타	완전생산기준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1512.21	조유(粗油) [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51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5.13		야자[코프라(copra)]유 · 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 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1513.11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1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	
		1513.21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13.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5.14		유채유(rape oil, colza oil)나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이나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1514.11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14.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1514.91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14.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5.15		그 밖의 비취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 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	
		1515.11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15.19	기타	완전생산기준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21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15.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515.3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완전생산기준
		1515.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완전생산기준
		151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5.16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테르화한(re-esterified) 것이나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10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완전생산기준
		1516.20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완전생산기준
	15.17		마가린,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 1516 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1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151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18	1518.00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완전생산기준
	15.20	1520.00	글리세롤(glycerol)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와 글리세롤 폐액(廢液)	완전생산기준
	15.21		식물성 납(蠟) [트리글리세라이드 (triglyceride)는 제외한다] · 밀랍(蜜蠟) · 그 밖의 곤충납(昆蟲蠟) 및 경납(鯨蠟) (정제했는지 또는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1521.10	식물성 납(蠟)	완전생산기준
		152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5.22	1522.00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이나 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완전생산기준
제 4 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16			제 16 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6.01	1601.00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 설육(屑肉)이나 피	
		1602.10	균질화한 조제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20	동물 간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 (제 01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31	칠면조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돼지로 만든 것	
		1602.41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42	어깨살과 그 절단육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4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50	소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90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3	1603.00	육·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 (extract)과 즙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와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04.11	연어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2	청어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3	정어리 · 사르디넬라(Sardinella) · 브리스링 (brisling)이나 스프랫(sprat)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4	다랑어 · 가다랑어와 버니토 (bonito) [사르다(Sarda) 종]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5	고등어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6	멸치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7	뱀장어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2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1604.31	캐비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4.32	캐비아 대용물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 ·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10	게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새우류	
		1605.21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2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30	바닷가재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40	그 밖의 갑각류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연체동물	
		1605.51	굴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2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3	홍합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4	갑오징어와 오징어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5	문어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6	클램(clam) · 새조개와 피조개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7	전복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605.58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61	해삼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62	성게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63	해파리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605.6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7			제 17 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701.12	사탕무당	완전생산기준
		1701.13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완전생산기준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완전생산기준
			기타	
		1701.91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70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7.0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유당(乳糖)과 유당(乳糖)시럽	
		1702.11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乳糖) [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 이상인 것	완전생산기준
		1702.19	기타	완전생산기준
		1702.20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완전생산기준
		1702.3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1702.4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이고 100 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1702.5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완전생산기준
		1702.60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702.90	기타[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류(糖類)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17.03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3.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완전생산기준
		17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704.1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7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8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	1801.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2	1802.00	코코아의 껍데기·껍질 그리고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 [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3.1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3.2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4	1804.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8.05	1805.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10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20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이나 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paste)·가루·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이나 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806.31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32	속을 채우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19			제 19 류 곡물·고운 가루·전분이나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1.10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4 류는 제외한다)
		1901.20	제 1905 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11	새의 알을 넣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2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30	그 밖의 파스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40	쿠스쿠스(cousco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3	1903.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날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 flake)]과 날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4.10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904.20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 (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 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30	불거 밀(bulgur whea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		빵 · 파이 · 케이크 ·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 실링웨이퍼(sealing wafer) · 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905.10	귀리빵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20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스위트 비스킷, 와플과 웨이퍼	
		1905.31	스위트 비스킷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32	와플과 웨이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40	러스크(rusk) · 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			제 20 류 채소 · 과일 · 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 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	오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7 류는 제외한다)
	20.0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2.1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3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 (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1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 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4.10	감자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4.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 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10	균질화한 채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05.20	감자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4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콩[비그나(Vigna) 종 · 파세리스(Phaseolus) 종]	
		2005.51	껍데기를 벗긴 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6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70	올리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8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Zea mays var. saccharata)]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채소(채소의 혼합물을 포함 한다)	
		2005.91	죽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6	2006.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 과일 · 견과류 · 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7		잼 · 과일젤리 · 마멀레이드(marmalade) ·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및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 (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했는지에 상관없다)	
		2007.10	균질화한 조제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07.91	감귤류의 과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0805.20 호, 제 08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007.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 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견과류·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11	땅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20	파인애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30	감귤류 과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0805.20 호, 제 08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008.40	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50	살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60	체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70	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 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80	초본류 딸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 2008.19 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91	팜 하트(palm hear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3	크랜베리(cranberry) [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 (Vaccinium vitis-idaea)]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7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오렌지주스	
		2009.11	냉동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12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로 (pomelo)를 포함한다] 주스	
		2009.2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009.3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0805.20 호, 제 08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009.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0805.20 호, 제 08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파인애플주스	
		2009.4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50	토마토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2009.61	브릭스(Brix)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사과주스	
		2009.7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7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09.81	크랜베리 (cranberry) [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 (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 (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 (Vaccinium vitis-idaea)] 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8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90	혼합 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0805.20 호, 제 08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1			제 21 류 각종 조제 식료품	
	21.01		커피 ·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 (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 ·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 및 이들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와 농축물	
			커피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 (essence)와 농축물 그리고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1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와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1.12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와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101.20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와 농축물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나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1.30	볶은 치커리(chicory)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 그리고 이들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와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2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10	활성 효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2.20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2.3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10	간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20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30	겨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4		수프 · 브로드(broth)와 수프 · 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104.10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4.2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5	2105.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			제 22 류 음료·주류와 식초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10	광천수와 탄산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 2009 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202.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3	2203.00	맥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 20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1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2204.21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30	그 밖의 포도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205.1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6	2206.00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207.2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 (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 (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8.20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30	위스키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4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50	진(gin)과 제네바(genev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60	보드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70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2.09	2209.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			제 23 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23.01		육이나 설육(屑肉)·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301.1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과 수지박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1.20	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이나 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10	옥수수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30	밀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40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5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1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2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3.3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3.04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 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5	2305.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 (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304 호나 제 2305 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10	목화씨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20	아마씨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3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2306.41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5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6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3.07	2307.00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8	2308.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1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			제 24 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401.10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2401.20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2401.30	담배 부산물	완전생산기준
	24.02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와 켈런(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402.10	시가(cigar)·셔루트(cheroot)와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2402.20	켈런(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24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4.03		그 밖의 제조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 (essence)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2403.11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완전생산기준
		24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2403.91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완전생산기준
		2403.99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5 부 광물성 생산물				
25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와 시멘트	
	25.01	2501.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 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완전생산기준
	25.02	2502.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3	2503.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과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4		천연 흑연	
		2504.10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05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6 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5.10	규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6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6.10	석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6.20	규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7	2507.00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 [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		그 밖의 점토(제 6806 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 · 홍주석(紅柱石) · 남정석(藍晶石)과 규선석(珪線石) [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 나 다이ナス 어스(dinas earth)	
		2508.10	벤토나이트(bentoni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30	내화(耐火) 점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40	그 밖의 점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50	홍주석(紅柱石) · 남정석(藍晶石)과 규선석(珪線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8.60	멀라이트(mulli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08.70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 (dinas eart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09	2509.00	초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0		천연 인산칼슘·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과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10	잘게 부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0.20	잘게 부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1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煨燒)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16 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2511.1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1.2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2	2512.00	규조토[예: 키질구어(kieselguhr) · 트리폴리트(tripolite) · 다이어토마이트 (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겔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3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 (corundum) ·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2513.10	부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13.20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 재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4	2514.00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5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 에코신 (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이나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 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대리석과 트래버틴(travertine)	
		2515.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5.12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 으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5.20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 (碑石)용이나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 설화 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16		화강암 · 반암(斑巖) · 현무암 · 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이나 건축용 암석 [툽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화강암	
		2516.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12	툽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20	사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90	그 밖의 석비(石碑)용이나 건축용 암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		자갈 · 왕자갈 · 쇄석(碎石) [콘크리트용 · 도로포장용 · 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 (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 (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 macadam),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 · 파편과 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17.10	자갈·왕자갈·쇄석(碎石) [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 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 (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20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 (소호 제 2517.10 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3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과 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41	대리석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8		백운석(白雲石) [하소(煨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과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2518.10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8.20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8.3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19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熔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기타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9.1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1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0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 [하소(煨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0.10	석고와 무수(無水)석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0.20	플라스터(plaster)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1	2521.00	석회석 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2		생석회(生石灰) · 소석회(消石灰)과 수경성(水硬性) 석회(제 2825 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2.10	생석회(生石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2.20	소석회(消石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2.30	수경성(水硬性) 석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23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 슬래그(slag) 시멘트 · 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	
		2523.10	시멘트 클링커(clink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2523.21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3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3.90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4		석면	
		2524.10	청(靑)석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5		운모(조개 것을 포함한다)와 운모 웨이스트(waste)	
		2525.1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개 운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5.20	운모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5.30	운모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26		천연 동석(凍石)[툽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활석	
		2526.10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6.20	부수거나 가루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8	2528.00	천연 봉산염과 그 정광(精鑛) [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봉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봉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된 봉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29.10	장석(長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형석(螢石)	
		2529.21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9.22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29.30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3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30.10	질석(蛭石) · 진주암(眞珠巖)과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30.2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5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6			제 26 류 광(鑛) · 슬래그(slag)와 회(灰)	
	26.01		철광과 그 정광(精鑛) [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철광과 그 정광 [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은 제외한다]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1.12	응결시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1.2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2	2602.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3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4	2604.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5	2605.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6	2606.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7	2607.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8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09	2609.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6.10	261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1	2611.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2		우라늄광이나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2612.1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2.2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2613.10	배소(焙燒) 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4	2614.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5		니오븀광·탄탈륨광·바나듐광이나 지르코늄광과 이들의 정광(精鑛)	
		2615.1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2616.10	은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7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2617.1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6.18	2618.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 [슬래그 샌드(slag sand)]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6.19	2619.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 (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26.20		슬래그(slag), 회(灰)와 잔재물 (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2620.11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완전생산기준
		2620.19	기타	완전생산기준
			주로 납을 함유하는 것	
		2620.21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완전생산기준
		2620.29	기타	완전생산기준
		2620.3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완전생산기준
		2620.4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완전생산기준
		2620.6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완전생산기준
			기타	
		2620.91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완전생산기준
		2620.9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6.21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켄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621.1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완전생산기준
		262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27			제 27 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27.01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석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2701.11	무연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1.12	유연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1.19	그 밖의 석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1.20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2		갈탄(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흑옥은 제외한다)	
		2702.1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2.20	응결시킨 갈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7.03	2703.00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4	2704.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 갈탄이나 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 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5	2705.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 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6	2706.00	석탄·갈탄이나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7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707.10	벤조올(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7.20	톨루올(톨루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7.30	크실롤(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7.40	나프탈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707.5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 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순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2707.91	크레오소트(creosote)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8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2708.10	피치(pitc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8.20	피치코크스(pitch coke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09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0.2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액화한 것	
		2711.11	천연가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12	프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13	부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711.14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틸렌과 부타디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가스 상태인 것	
		2711.21	천연가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2		석유젤리 · 파라핀왁스 · 마이크로크리스탈린(micro crystalline) 석유왁스 · 슬랙왁스 (slack wax) · 오조케라이트 (ozokerite) · 갈탄왁스 · 토탄왁스와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712.10	석유젤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2.2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		석유코크스 · 석유역청(瀝靑)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석유코크스	
		2713.11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12	하소(煨燒)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20	석유역청(瀝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3.9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7.14		천연의 역청(瀝靑)과 아스팔트,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이나 유모 혈암(油母 頁巖) 및 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4.10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이나 유모 혈암(油母 頁巖) 및 타르샌드(tar san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5	2715.00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천연 역청(瀝靑)·석유역청(瀝靑) · 광물성 타르나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 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6	2716.00	전기에너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 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28			제 28 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 (稀土類) 금속·방사성원소나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8.01		플루오르·염소·브롬과 요드	
		2801.10	염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1.20	요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1.30	플루오르와 브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2	2802.00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03	2803.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10	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희가스(rare gas)	
		2804.21	아르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30	질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40	산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50	붕소와 텔루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규소	
		2804.61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70	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80	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4.90	셀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 (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알칼리나 알칼리토류 금속	
		2805.11	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12	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30	희토류(稀土類) 금속, 스칸듐과 이트륨 (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5.40	수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6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2806.10	염화수소(염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6.20	클로로 황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7	2807.00	황산과 발연황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8	2808.00	질산과 황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09.10	오산화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0	2810.00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 금속 산화물	
			그 밖의 무기산	
		2811.11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무기 비(非) 금속 산화물	
		2811.21	이산화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11.22	이산화규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2		비(非)금속 할로젠화물과 산화할로젠화물	
		2812.10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3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2813.10	이황화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4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14.10	무수(無水)암모니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4.20	암모니아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2815.11	고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5.12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5.2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5.30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16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 수산화물과 과산화물	
		2816.10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6.4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 수산화물과 과산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7	2817.00	산화아연, 과산화아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8		인조 커런덤(corundum)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10	인조 커런덤(corundum)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8.20	산화알루미늄 [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8.30	수산화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9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19.10	삼산화크로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0		산화망간	
		2820.10	이산화망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21		산화철과 수산화철, 어스컬러 (earth colour) [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_2O_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1.10	산화철과 수산화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1.20	어스컬러 (earth colou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2	2822.00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3	2823.00	산화티타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4		산화납, 연단(鉛丹)과 오렌지납	
		2824.10	일산화납[리사지 (litharge) · 메시코트 (massic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과 금속과산화물	
		2825.10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20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30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40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5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60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25.70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80	산화안티모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 · 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플루오르화물	
		2826.12	플루오르화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3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 [인조 빙정석(氷晶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		염화물 ·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요드화물과 산화요드화물	
		2827.10	염화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20	염화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염화물	
		2827.31	마그네슘 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2	알루미늄 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5	니켈 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27.41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2827.51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7.60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 상관습(商慣習) 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 아염소산염 · 하이포아브롬산염	
		2828.1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염소산염	
		2829.11	염소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0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0.10	황화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1		아이티온산염과 슐폭실산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31.10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술폭실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2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2832.10	아황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2.20	그 밖의 아황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2.30	티오황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		황산염 · 명반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황산나트륨	
		2833.11	황산이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황산염	
		2833.21	황산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2	황산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4	황산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5	황산구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7	황산바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30	명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3.40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4		아질산염과 질산염	
		2834.10	아질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질산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34.21	질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과 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2835.10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산염	
		2835.22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4	인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5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6	그 밖의 인산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폴리인산염	
		2835.31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6.20	탄산이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3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36.40	탄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50	탄산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60	탄산바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2836.91	탄산리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92	탄산스트론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7		시아나화물 · 산화시아나화물과 시안착염	
			시아나화물과 산화시아나화물	
		2837.11	시아나화나트륨과 산화시아나화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7.20	시아나착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9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규산나트륨	
		2839.11	메타규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3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0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사붕산이나트륨[정제붕사(精製硼砂)]	
		2840.11	무수물(無水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2840.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284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2840.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840.20	그 밖의 붕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0.30	과산화붕산염 (과붕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30	중크롬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50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아망간산염 · 망간산염과 과망간산염	
		2841.61	과망간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70	몰리브덴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80	텅스텐산염 [울프라메이트 (wolframa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2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 (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842.10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	
		2843.10	콜로이드 귀금속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은 화합물	
		2843.21	질산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30	금 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3.90	그 밖의 화합물과 아말감(amalga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		방사성원소 · 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2844.10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 [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천연 우라늄이나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2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 [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 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44.30	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 [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 · 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40	방사성 원소 · 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 2844.10 호 · 제 2844.20 호나 제 2844.30 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 · 분산물(分散物) [서멧(cermet)을 포함한다] · 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 원소 · 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4.5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5		동위원소(제 2844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2845.10	중수(重水) (산화 중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6		희토류(稀土類) 금속 · 이트륨 · 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나 유기 화합물	
		2846.10	세륨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253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84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253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47	2847.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8	2848.00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9.10	탄화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9.20	탄화규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4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50	2850.00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과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49 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52		무기나 유기 수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2.1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5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8.53	2853.00	그 밖의 무기화합물[중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			제 29 류 유기화합품	
	29.01		비환식탄화수소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1.10	포화비환식탄화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2901.21	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2	프로펜(프로필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3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4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		환식탄화수소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과 시클로테르펜	
		2902.11	시클로헥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20	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30	톨루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크실렌	
		2902.41	오르토-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42	메타-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43	파라-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44	혼합크실렌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50	스티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60	에틸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70	큐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3		탄화수소의 할로젠화 유도체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11	염화메탄(염화메틸) 과 염화에탄(염화에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2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3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4	사염화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5	이염화에틸렌 (ISO) (1,2-이염화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21	염화비닐(염화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2	삼염화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3	사염화에틸렌 (과염화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롬화나 요드화유도체	
		2903.31	이브롬화에틸렌 (ISO) (1,2-디브로모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젠화유도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할로젠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2903.71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3.72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3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4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5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6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 브로모 트리플루오르메탄과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7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젠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8	그 밖의 퍼할로젠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이나 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 할로젠화유도체	
		2903.81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HCH(ISO)] [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82	앨드린(ISO) · 클로르덴(ISO) 과 헵타클로르(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젠화유도체	
		2903.91	클로로벤젠 · 오르토-디클로로벤젠과 파라-디클로로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92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 · 디 · 티 (ISO) [클로페노탄(INN), 1,1,1- 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 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할로젠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04.10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4.20	니트로나 니트로소화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포화 1 가알코올	
		2905.11	메탄올 (메틸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2	1-프로판올 (프로필알코올) 과 2-프로판올 (이소프로필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3	1-부탄올 (노르말-부틸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4	그 밖의 부탄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6	옥탄올 (옥틸알코올) 과 그 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7	1-도데칸올 (라우릴알코올) · 1-헥사데칸올 (세틸알코올) 과 1-옥타데칸올 (스테아릴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불포화 1 가알코올	
		2905.22	비환식테르펜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 가알코올	
		2905.31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32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다가알코올	
		2905.41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2	펜타에리트리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3	만니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4	디-글루시톨(소르비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5	글리세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비환식알코올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51	에스클로비놀(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이나 시클로테르펜	
		2906.11	멘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12	시클로헥산올 · 메틸시클로헥산올과 디메틸시클로헥산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6.13	스테롤과 이노시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향족(芳香族)	
		2906.21	벤질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		페놀과 페놀알코올	
			1 가페놀	
		2907.11	페놀(석탄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2	크레졸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3	옥틸페놀·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5	나프톨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	
		2907.21	레소르시놀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2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3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 (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할로젠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2908.11	펜타클로로페놀(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2908.91	디노셉 (ISO) 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92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 [DNOC (ISO)] 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 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 에테르 · 과산화케톤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과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 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비환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1	디에틸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2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이나 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 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30	방향족 (芳香族) 에테르와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 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에테르알코올과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9.41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3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나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4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나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50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09.60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 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		3 원고리의 에폭시드 ·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 · 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 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1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2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30	1-클로로-2,3- 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40	디엘드린(ISO, 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1	2911.00	아세탈·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비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11	메탄알(포름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12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21	벤즈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알데히드-알코올, 알데히드-에테르· 알데히드-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알데히드	
		2912.41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 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42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 벤즈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5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2.60	파라포름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3	2913.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		케톤 · 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 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비환식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11	아세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2	부탄온(메틸에틸케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3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이나 시클로테르펜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22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23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향족 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31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4.40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50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퀴논	
		2914.61	안트라퀴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4.70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젠화물 · 과산화물과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포름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5.11	포름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12	포름산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13	포름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초산과 그 염, 무수(無水)초산	
		2915.21	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24	무수(無水)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초산에스테르	
		2915.31	초산에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2	초산비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5.33	초산노르말부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6	초산디노셉 (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4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 디클로로 아세트산이나 트리클로로 아세트산 ·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5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60	부탄산 · 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70	팔미트산 · 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식모노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과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 물 · 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2916.11	아크릴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2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3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4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5	올레산 · 리놀레산 · 리놀렌산과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6.16	비나과크릴 (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2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이나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젠화물 · 과산화 물 · 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젠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2916.31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2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4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6.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無水物) · 할로젠화물 · 과산화물과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젠화물 · 과산화 물 · 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2917.11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2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3	아젤라산 · 세바스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4	무수말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7.20	포화지환식이나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젠화물 · 과산화 물 · 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젠화물 · 과산화 물 · 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2917.32	오르토프탈산디옥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3	오르토프탈산디노닐이나 오르토프탈산디데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4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5	무수프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7	테레프탈산디메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젠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이들의 할로젠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 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젠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2918.11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2	타르타르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8.13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4	시트르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5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6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8	클로로벤질레이트(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2918.21	살리실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2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3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30	알데히드 ·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 (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무수물 (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2918.91	2,4,5-티(ISO) (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1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 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1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 (ISO)(메틸-파라티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		아민관능화합물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11	메틸아민 · 디메틸아민이나 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비환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1.21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22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30	포화지환식아민 · 불포화지환식아민 ·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이나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41	아닐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2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3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4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5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 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 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6	암페타민(INN) · 벤즈페타민(INN) · 텍스암페타민(INN) · 에틸암페타민(IN N) · 펜캄파민(INN) · 레페타민(INN) · 레브암페타민(INN) · 메페노렉스(IN N)와 펜터민(INN),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1.51	오르토-페닐렌디아민·메타-페닐렌디아민 · 파라-페닐렌디아민· 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1.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아미노알코올(동중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 그리고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11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2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3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4	텍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아미노나프톨·그 밖의 아미노페놀 (동중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 그리고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21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아미노-알데히드·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동중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2922.31	암페프라몬(INN)·메타돈(INN)· 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41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2	글루탐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3	안트라닐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4	틸리딘(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2.50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3		제 4 암모늄염과 수산화 제 4 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3.10	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3.20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11	메프로바메이트(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모노크로토포스(ISO)와 포스파미돈(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21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3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안트라닐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4	에치나메이트(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11	사카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12	구루테치미드(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21	클로르디메포름(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10	아크릴로니트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6.2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6.30	펜프로포렉스 (INN) 와 그 염, 메사돈 (INN) 제조중간체 (4-시아노- 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7	2927.00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이나 아족시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8	2928.00	히드라진이나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9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		유기-황화합물	
		2930.20	티오키르바메이트와 디티오키르바메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30	티우람모노설파이드 · 티우람디설파이 드나 티우람테트라설파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40	메티오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50	캡타폴 (ISO) 과 메타미도포스 (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10	테트라메칠납과 테트라에칠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1.20	트리부틸틴 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불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11	테트라히드로푸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12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13	푸르푸릴 알코올과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20	락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2932.91	이소사프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2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3	피페로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4	사프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5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불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불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21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불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31	피리딘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2	피페리딘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3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디페녹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일(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 트리메페리딘(INN) 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41	레보파놀(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52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3	아로바르비탈(INN) · 아모바르비탈 (INN) · 바르비탈(INN) · 부탈비탈 (INN) · 부토바르비탈(INN) · 싸이클로바르비탈(INN) · 메틸페노바르비탈(INN) · 펜토바르비탈(INN) · 페노바르비탈(INN) · 섹부타바르비탈 (INN) · 세코바르비탈(INN) · 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4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유도체와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5	로프라졸람(INN) · 메크로퀴론(INN) · 메타퀴론(INN) · 지페프롤(INN) 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불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 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61	멜라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락탐	
		2933.71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72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79	그 밖의 락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	
		2933.91	알프라졸람(INN) · 카마제팜(INN) ·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 클로나제팜(INN) · 클로라제페이트 · 델로라제팜(INN) · 디아제팜(INN) · 에스타졸람(INN) ·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 플르디아제팜(INN) · 플루니트라제팜(INN) · 플루라제팜(INN) · 할라제팜(INN) · 로라제팜(INN) · 로르메타제팜(INN) · 마진돌(INN) · 메다제팜(INN) · 미다졸람(INN) · 니메타제팜(INN) · 니트라제팜(INN) · 놀다제팜(INN) · 옥사제팜(INN) · 피나제팜(INN) · 프라제팜(INN) · 피로발레톤(INN) · 테마제팜(INN) · 테트라제팜(INN) · 트리아졸람(INN) 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 고리 화합물	
		2934.10	불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30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4.91	아미노렉스(INN) · 브로티졸람(INN) · 클로티아제팜(INN) · 클록사졸람(INN) · 텍스트로모라마이드(INN) · 할록사졸람(INN) · 케타졸람(INN) · 메소카브(INN) · 옥사졸람(INN) · 페몰린(INN) · 펜디메트라진(INN) · 펜메트라진(INN) · 서펜타닐(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5	2935.00	술폰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이나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6.21	비타민 A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2	비타민 B1 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3	비타민 B2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4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나 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5	비타민 B6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6	비타민 B12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7	비타민 C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6.28	비타민 E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29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6.90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		호르몬 · 프로스타글란딘 ·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 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 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 프로테인 호르몬과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그리고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11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12	인슐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21	코르티손 · 히드로코르티손 · 프레드니 손(데히드로코르티손)과 프레드니손 (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2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젠화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7.23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50	프로스타글렌딘 ·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그리고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 이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2938.10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 이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11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INN) · 코데인 · 디히드로코데인(INN) · 에틸모르핀 · 에토르핀(INN) · 헤로인 · 히드로코돈(INN) · 히드로모르폰 (INN) · 모르핀 · 니코모르핀(INN) · 옥시코돈(INN) · 옥시모르폰(INN) · 폴코딘(INN) · 테바콘(INN)과 테바인,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20	기타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9.30	카페인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에페드린과 이들의 염	
		2939.41	에페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2	슈도에페드린 (INN) 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3	캐친 (INN) 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4	놀에페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테오피린 · 아미노피린 (테오피린－ 에틸렌디아민) 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51	페네틸린 (INN) 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이들의 염	
		2939.61	엘고메트린 (INN) 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2	엘고타민 (INN) 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3	리세르그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2939.91	코카인 · 에크코닌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 (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이들의 염 ·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3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40	294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 2937 호·제 2938 호나 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		항생물질	
		2941.10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20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30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4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50	에리트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9.42	2942.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			제 30 류 의약품	
	30.01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 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001.20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 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2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이나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 (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2.2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2.30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 3002 호·제 3005 호나 제 3006 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3.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 (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20	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3003.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40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제 2937 호의 호르몬과 기타 물품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제 3005 호나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4.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004.20	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3004.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004.32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0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004.40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제 2937 호의 호르몬과 기타 물품 이나 향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004.50	그 밖의 의약품(제 2936 호의 비타민 이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0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0.05		탈지면 · 거즈 · 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 · 반창고 · 습포제) 으로서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 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5.10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 4 호의 물품 으로 한정한다)	
		3006.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 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와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 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20	혈액형 분류용 시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006.3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40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50	구급상자와 구급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60	제 2937 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7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 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3006.91	장루(腸癭) 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006.92	폐(廢) 의료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			제 31 류 비료	
	31.01	3101.00	동물성이나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이나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 ·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102.21	황산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3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 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4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50	질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60	질산칼슘 ·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80	요소와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2.90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3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3.10	과인산석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4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4.20	염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4.30	황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인과 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등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1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등글넓적한 (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5.20	질소·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 (인산이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5.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 (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질소와 인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3105.51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5.6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1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			제 32 류 유연용이나 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32.01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3201.10	퀘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1.2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2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2.10	합성 유기유연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3	3203.00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11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4.12	산성 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매염(媒染)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4.13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4.14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4.15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4.16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4.17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4.19	기타(소호 제 3204.11 호부터 제 3204.19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04.2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 유기생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5	3205.00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 3203 호 · 제 3204 호나 제 3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 (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 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6.2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3206.41	군청(群靑)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6.42	황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도폰 (lithopone) · 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6.50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07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와 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요업·에나멜공업이나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 [가루·알갱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7.10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 ·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7.20	법랑과 유약·유약용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7.30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7.4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 [가루·알갱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8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 [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 (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3208.10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8.2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09		페인트와 바니시 (varnish) [에나멜과 래커 (lacquer) 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 (水性) 매질 (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09.1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0	3210.0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 (varnish) [에나멜 · 래커 (lacquer) 와 디스템퍼 (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족의 완성이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1	3211.00	조제 드라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2		비수성 (非水性) 매질 (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와 금속플레이크 (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 · 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 (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 (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10	스탬프용 박 (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13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등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 · 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3.10	세트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4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 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 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10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 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5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쇄용 잉크	
		3215.11	흑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2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3			제 33 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	
	33.01		정유(essential oil) [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 (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 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 (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정유(essential oil) (감귤류로 한정 한다)	
		3301.12	오렌지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13	레몬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정유(essential oil) (감귤류 외의 것 으로 한정한다)	
		3301.24	박하유[멘타피페리타(Mentha piperit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25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30	레지노이드(resinoi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 1211.20 호, 제 1302.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3.0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 (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2.10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3	3303.00	향수와 화장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 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20	눈화장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 (pedicure)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3304.91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10	샴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305.2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 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 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30	헤어 래커(hair lacqu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6		구강이나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3306.10	치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6.20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3307.10	면도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2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30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3307.41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30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3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			제 34 류 비누 · 유기계면활성제 · 조제 세제 · 조제 윤활제 · 인조 왁스 · 조제 왁스 · 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 ·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조형용 페이스트(paste) · 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 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 · 케이크 모양 · 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 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 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 (wadding) · 펠트(felt)와 부직포	
			비누 ·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막대(bar) 모양 · 케이크 모양 · 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wadding) · 펠트(felt)와 부직포	
		3401.11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1.2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401.3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 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4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3402.11	음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12	양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13	비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20	소매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나 부식방지제·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 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 (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는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403.1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3403.9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4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4.2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 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 work)용·유리용이나 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 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 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 이나 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 3404 호의 왁스는 제외 한다)	
		3405.1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2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3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405.4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 · 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6	3406.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4.07	3407.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 (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 · 말굽 모양 · 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 (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5.01		카세인(casein) · 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3501.10	카세인(case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알의 흰자위(egg albumin)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502.11	건조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2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3	3503.00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 3501 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4	3504.00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하이드과우더(hide powder) (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 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3505.1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1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505.20	글루(glu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5.06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10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3506.91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7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3507.1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			제 36 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	3601.00	화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2	3602.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3	3603.00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6.04		불꽃제품 · 신호용 조명탄 · 레인로켓 (rain rocket) · 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3604.10	불꽃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5	3605.00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6		페로세륨과 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 2 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3606.1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 한다)에 넣은 액체연료나 액화가스 연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6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			제 37 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7.01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와 평면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 · 판지나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1.10	엑스선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1.2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701.30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기타	
		3701.91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		롤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나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과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2.10	엑스선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702.31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32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702.41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42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43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44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그 밖의 필름[천연색 사진용 (폴리크롬)]	
		3702.52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53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54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55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56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기타	
		3702.96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702.97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2.98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3		사진 인화지 · 판지와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3.10	롤 모양(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3.20	기타[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7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7.04	3704.00	사진플레이트 · 필름 · 인화지 · 판지와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5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 한다)	
		3705.10	오프셋 복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 인지에 상관없다)	
		3706.10	폭이 3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7.07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 · 글루(glue) · 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 (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3707.10	감광유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7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페이스트(paste) · 블록 · 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10	인조흑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1.2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1.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 [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3802.10	활성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3	3803.00	톨유(tall oil) (정제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04	3804.00	목재펠트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 (廢液) [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 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 3803 호의 톨유(tall oil) 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5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나 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 (중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5.10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나 황산테레빈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		로진(rosin) · 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 (rosin oil), 런검(run gum)	
		3806.10	로진(rosin) 과 수지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20	로진염 · 수지산염 · 로진(rosin)이나 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rosin)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30	에스테르 검(ester g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07	3807.00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 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8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 ·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이나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와 파리잡이 끈끈이) 으로 한정한다]	
		3808.50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3808.91	살충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8.92	살균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8.93	제초제·발아억제제와 식물성장조절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8.94	소독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9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이나 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 ·제지산업·가죽산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09.1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3809.91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9.92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09.93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불임용·땀질용이나 용접용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불임용·땀질용이나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0.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불임용·땀질용이나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안티녹(anti-knock)제	
		3811.11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윤활유 첨가제	
		3811.21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이나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이나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1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2.20	고무용이나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2.30	고무용이나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3	3813.00	소화기용 조제품과 충전물, 충전된 소화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4	3814.00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나 바니시(vanish) 제거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와 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3815.11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15.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6	3816.00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 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 3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7	3817.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 (제 2707 호나 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8	3818.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 (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 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 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19	3819.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0	3820.0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1	3821.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이나 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22	3822.00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제 3002 호나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3823.11	스테아린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2	올레인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3	톨유(tall oil) 지방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3.7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1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3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 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40	시멘트용·모르타르용이나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24.5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60	소르비톨(sorbitol) (소호 제 2905.44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메탄·에탄이나 프로판의 할로젠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	
		3824.71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2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이나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3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4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 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5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6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7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이나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24.78	과불화탄소(PFCs)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 [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 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옥시란(산화에틸렌) ·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를 함유한 혼합물과 조제품	
		3824.81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2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83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 6 호의 그 밖의 폐기물	
		3825.10	생활폐기물	완전생산기준
		3825.20	하수 찌꺼기	완전생산기준
		3825.30	감염성 폐기물	완전생산기준
			폐유기용제	
		3825.41	할로젠을 함유하는 것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25.49	기타	완전생산기준
		3825.50	금속세정액·유압액·브레이크액과 부동액 폐기물	완전생산기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3825.61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완전생산기준
		3825.69	기타	완전생산기준
		382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38.26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 (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 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39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3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10	폴리프로필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02.20	폴리이소부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폴리스티렌	
		3903.11	발포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2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젠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1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	
		3904.21	가소화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22	가소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3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4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5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플루오르 중합체	
		3904.61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 [일차제품 (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폴리(초산비닐)	
		3905.12	물에 분산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21	물에 분산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30	폴리(비닐알코올) [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 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3905.91	공중합체 (共重合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6		아크릴의 중합체 [일차제품 (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1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07		폴리아세탈수지 · 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 알키드수지 · 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10	폴리아세탈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20	그 밖의 폴리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30	에폭시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40	폴리카보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50	알키드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70	폴리(락트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3907.91	불포화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 으로 한정한다]	
		3908.10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		아미노수지 · 페놀수지와 폴리우레탄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 한다]	
		3909.10	요소수지와 티오요소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09.20	멜라민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30	그 밖의 아미노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40	페놀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09.50	폴리우레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0	3910.00	실리콘수지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1		석유수지 · 쿠마론-인텐수지 · 폴리에르펜 · 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기타 물품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1.10	석유수지 · 쿠마론 · 인텐이나 쿠마론-인텐수지와 폴리에르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초산셀룰로오스	
		3912.11	가소화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12	가소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2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셀룰로오스 에테르	
		3912.31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1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3.10	알긴산과 그 염·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4	3914.00	이온교환수지[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 (paring)과 스크랩(scrap)	
		3915.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3915.2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3915.3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3915.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와 형재 (型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916.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6.2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16.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 (elbow)·플랜지(flange)]	
		3917.10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gut)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경질(硬質)의 관·파이프와 호스	
		3917.21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2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3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2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관·파이프와 호스	
		3917.31	연질(軟質)의 관·파이프와 호스[과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2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3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7.40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 9 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8.1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8.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10	롤 모양인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과 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2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3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0.43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20.51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 릴 에스테르나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로 만든 것	
		3920.61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69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3920.71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73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79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0.91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2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3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4	페놀수지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0.9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 (sheet)·필름·박(箔)과 스트립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셀룰러	
		3921.11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2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3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4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1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2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 · 샤워통 · 설거지통 · 세면기 · 비데 · 화장실용팬 ·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 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2.10	목욕통 · 샤워통 · 설거지통과 세면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2.2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이나 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 · 마개 · 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10	상자 · 케이스 · 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3923.2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2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30	카보이(carboy) · 병 · 플라스크(flask) 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23.40	스풀(spool) · 콕(cop) · 보빈(bobbin) 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50	뚜껑 · 마개 · 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 위생용품이나 화장용품	
		3924.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5.10	저장기 · 탱크 · 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20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30	셔터 · 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 (venetian blind)를 포함 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그리고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 3901 호부터 제 3914 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926.10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2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 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30	가구 · 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26.4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39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40.01		천연고무 · 발라타(balata) · 구타페르카(gutta-percha) · 구아울(guayule) · 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검(gum) [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 · 시트(sheet)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1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 없다]	완전생산기준
			천연고무(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21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완전생산기준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완전생산기준
		4001.29	기타	완전생산기준
		4001.30	발라타(balata) · 구타페르카(gutta-percha) · 구아울(guayule) · 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검(gum)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 (factice) [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와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4002.1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20	부타디엔 고무(B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 고무(IIR)와 할로-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CIIR 이나 BIIR)	
		4002.31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부틸고무)(II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	
		4002.4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4002.5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60	이소프렌 고무(I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02.7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 (EPD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80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002.9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3	4003.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또는 판·시트(sheet)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4	4004.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과 스크랩(scrap) [경질(硬質) 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그리고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완전생산기준
	40.05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5.10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5.20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005.91	판·시트(sheet)와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6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 [예: 막대(rod)·관과 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와 링)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06.1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7	4007.00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 스트립·막대(rod)와 형재(形材)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 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008.11	판·시트(sheet)와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	
		4008.21	판·시트(sheet)와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와 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 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4009.1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1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09.2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2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3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3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4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09.4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 (transmission)용 벨트나 벨팅 (belting)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	
		4010.11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12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전동(transmission)용 벨트나 벨팅 (belting)	
		4010.31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 (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10.32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 (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3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 (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4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 (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5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6	엔드리스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 한다)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20	버스용이나 화물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11.30	항공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40	모터사이클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50	자전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헤링본(herring-bone)이나 이와 유사한 트레드(tread)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011.61	농경용이나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2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3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011.92	농경용이나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3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4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이나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타이어 트레드(tread)와 타이어 플랩(flap)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재생타이어	
		4012.11	승용자동차용 [스테이션왜건 (station wagon) 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12	버스용이나 화물자동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13	항공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20	중고 공기타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3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4013.10	승용자동차용 [스테이션왜건 (station wagon) 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 버스용이나 화물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3.20	자전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4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이나 의료용품 [젓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 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 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는 상관없다]	
		4014.10	콘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 [장갑 · 병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 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장갑, 병어리장갑	
		4015.11	외과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 한다]	
		4016.1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016.91	바닥 깔개와 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2	지우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3	개스킷(gasket) · 와셔(washer)와 그 밖의 실(se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4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 (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5	그 밖의 팽창성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0.17	4017.00	경질(硬質) 고무[예: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 부 원피 · 가죽 · 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 의 제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1			제 41 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 동물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101.2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 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 생 것·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1.50	전신 원피(16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1.90	기타[버트(butt), 벤드(bend), 벨리(belly)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2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 1 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102.1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털을 제거한 것	
		4102.21	산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3		그 밖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 1 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3.20	과충류의 원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3.30	돼지의 원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 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4.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104.4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 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5.1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5.3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산양의 원피	
		4106.2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22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돼지의 원피	
		4106.3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32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40	파충류의 원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106.91	습윤 상태의 것 [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92	건조 상태의 것 (크러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 [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전신 가죽	
		4107.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1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반신의 가죽을 포함한다)	
		4107.9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9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2	4112.00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 [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1.13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 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 을 포함한다]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 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3.10	산양의 가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20	돼지의 가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30	과충류의 가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4		새미가죽(chamois leather) [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 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114.10	새미가죽(chamois leather) [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4.20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1.15		컴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 [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이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 (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4115.10	컴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 [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이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115.20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 (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완전생산기준
42			제 42 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 (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1	4201.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2.02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 이그zek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 ·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 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충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 벌크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 ·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 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 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 ·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 ·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 ·이그zek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1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2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202.2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4202.3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3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202.9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9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203.10	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장갑류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30	벨트와 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203.4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5	4205.00	그 밖의 가죽제품이나 콤포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2.06	4206.00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 한다] ·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 · 방광이나 건(腱)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			제 43 류 모피 ·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43.01		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 4101 호 · 제 4102 호나 제 4103 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 한다)	
		4301.1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1.3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 브로드테일(Broadtail) · 카라쿨(Car acul) · 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 · 중국 · 몽고나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1.6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301.80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 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1.9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 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		모피(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한 것 으로서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 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 으로 한정하며, 제 430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전신 모피(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하며·머리 부분·꼬리 부분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302.11	밍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2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2.3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 (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3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4303.10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3.04	4304.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 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 (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4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		펠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 와 스크랩(scrap) [통나무·브리케트 (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1.10	펠나무(통나무·목편·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 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4401.21	침엽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1.22	활엽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통나무·브리케트(briq 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1.31	목재 펠릿(pelle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1.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02		목탄[셸(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2.10	대나무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		원목[껍질이나 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는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3.10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20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로 한정한다)	
		4403.41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와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403.91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92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3.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04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뽕죽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 [지팡이·산류 (傘類)·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휜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 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4404.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4.20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5	4405.00	목모(wood wool), 목분(wood flou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6		궤도용 받침목	
		4406.10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이나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 연마나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7.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열대산 목재(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407.21	마호가니(Mahogany) [스웨테니아(Swi etenia) 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07.22	비롤라(Virola) · 임부아(Imbuia)와 발사(Bals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5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와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6	화이트라왕(White Lauan) · 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 · 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 · 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와 아란(Ala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7	사펠리(Sapelli)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8	이로코(Irok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407.91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2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3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4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5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과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평삭(平削)한 것이나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나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8.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열대산 목재(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목재로 한정한다)	
		4408.31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와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9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나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축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나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9.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활엽수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09.21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 (wafer 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목재로 만든 것	
		4410.11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12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 (OSB: oriented strand 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중밀도 섬유판(MDF)	
		4411.12	두께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13	두께가 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9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14	두께가 9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11.92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93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을 초과하고 0.8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94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10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 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 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3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412.94	블록보드(blockboard)·라민보드(laminboard)와 배튼보드(batten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3	4413.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14	4414.00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 이나 이와 유사한 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5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 (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 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과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4415.10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 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5.20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과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 칼러(pallet colla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6	4416.00	나무로 만든 통·배럴(barrel)· 배트(vat)·텃(tub)·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7	4417.00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 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 [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8.10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20	문·문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4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18.50	지붕을 이는 판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60	기둥과 들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4418.71	모자이크 마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72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9	4419.00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0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이나 칼붙이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와 용기,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4420.10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1		그 밖의 목제품	
		4421.10	옷걸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			제 45 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5.01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 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 (cork)·알갱이 모양 코르크(cork)나 잘게 부순 코르크(cork)	
		4501.1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2	4502.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이나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 판 모양·시트(sheet) 모양이나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감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3		천연 코르크(cork) 제품	
		4503.10	마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4		응집 코르크(cork)(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응집 코르크 (cork)의 제품	
		4504.10	블록·판·시트(sheet)와 스트립 (strip), 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 없다), 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 (디스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6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6.01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매트류와 발(식물성 재료로 한정한다)	
		4601.21	대나무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22	등나무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601.92	대나무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93	등나무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94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1.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 4601 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602.11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12	등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0 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 · 판지와 이들의 제품				
47			제 47 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47.01	4701.00	기계목재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2	4702.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4703.11	침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3.19	활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3.21	침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3.29	활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표백하지 않은 것	
		4704.11	침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4.19	활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4.21	침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4.29	활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5	4705.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 (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의 펄프	
		4706.1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2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30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706.91	기계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92	화학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6.93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7.07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 와 스크랩(scrap)]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707.1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4707.2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4707.3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잡지와 이와 유사한 인쇄물)	완전생산기준
		4707.9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48			제 48 류 종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종이나 판지의 제품	
	48.01	4801.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		도포하지 않은 종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이나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 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 4801 호와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802.10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20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이나 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40	벽지용 원지(原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2.5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5	롤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6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7	그 밖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58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02.61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62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2.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03	4803.00	화장지나 안면용 티슈스톡·타월이나 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 (crinkled) 것·올록볼록한 (embossed) 것·구멍을 뚫은 (perforated) 것·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이나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 하며, 제 4802 호나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	
		4804.1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	
		4804.2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3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04.4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4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5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5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4.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지와 판지[를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플루팅지(fluting paper)	
		4805.11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12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테스트라이너(testliner) (재생라이너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05.2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25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30	아황산포장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40	여과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50	펠트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805.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5.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		황산지 · 내지지(耐脂紙) ·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6.10	황산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20	내지지(耐脂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3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6.40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07	4807.00	접붙인 종지와 판지[접착제로 접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 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8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 (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 (crinkled) 울룩불룩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지와 판지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 한다]	
		4808.10	물결 모양의 종지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8.40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울룩불룩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9		카본지·셀프복사지·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 (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나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9.20	셀프복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10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지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 [차이나 클레이 (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이나 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필기용·인쇄용이나 그 밖의 그래픽용 종지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10.13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14	시트(sheet) 모양인 것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필기용·인쇄용이나 그 밖의 그래픽용 종지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0.22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크라프트지와 판지(필기용·인쇄용 이나 그 밖의 그래픽용은 제외한다)	
		4810.31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3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종이와 판지	
		4810.92	여러 겹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와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 표면착색·표면장식이나 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제 4809 호나 제 4810 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1.10	타르·역청물질이나 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접착지와 판지	
		4811.41	셀프접착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1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 한다)	
		4811.51	표백한 것(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60	왁스 · 파라핀왁스 · 스테아린 (stearin) · 기름이나 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1.90	그 밖의 종이와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2	4812.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 필터슬래브와 필터플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3		켈런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 없다)	
		4813.1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3.20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4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창용 투명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14.20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올록볼록한 (embossed) 것·착색한 것·디자인 인쇄한 것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6		카본지·셀프복사지·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 48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 인지에 상관없다)	
		4816.20	셀프복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8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8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48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8.17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합엽서· 우편엽서와 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과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7.10	봉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7.20	봉합엽서·우편엽서와 통신용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7.3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과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18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 · 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손수건 · 클렌징티슈 · 타월 · 책상보 · 서비에트(serviette) · 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 · 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 · 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 · 종이 · 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8.10	화장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20	손수건 · 클렌징티슈이나 안면용 화장지 · 타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3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50	의류와 의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		종이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 · 포장대 · 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 · 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 (사무실 · 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2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19.30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4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50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19.6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 커버	
		4820.1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20	연습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3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와 서류철 표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4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5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21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 (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인쇄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2		제지용 펄프 · 종이나 판지로 만든 보빈(bobbin) · 스푼(spool) · 콕(cop) 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4822.1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		그 밖의 종이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 · 종이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20	여과용 종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4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 · 시트(sheet)과 다이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종이나 판지로 만든 쟁반 · 접시 · 플레이트 · 컵과 이와 유사한 것	
		4823.61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823.7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나 프레스한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2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			제 49 류 인쇄서적 · 신문 · 회화와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 · 타자문서와 도면	
	49.01		인쇄서적 · 소책자 · 리플릿(leaflet) 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1.10	단매인 것(접어 포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4901.91	사전 · 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2		신문 · 잡지와 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2.10	1 주에 4 회 이상 간행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3	4903.00	아동용 그림책이나 습화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4	4904.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5		지도 · 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 벽걸이용의 것 ·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4905.10	지구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905.91	책자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6	4906.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와 카본복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7	4907.00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이나 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somania)]	
		4908.1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s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09	4909.00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이나 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나 장식이 있는지에 상관 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0	491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	
		4911.91	서화·디자인과 사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9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50			제 50 류 견	
	50.01	5001.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2	5002.00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3	5003.00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실 웨이스트 (waste)와 가넷스톡(garnetted stock) 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50.04	5004.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5	5005.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6	5006.00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004 호 또는 제 50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0.07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5007.10	견 노일(noil)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7.20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 (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 (noil)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007.90	기타의 식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			제 51 류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1.01		양모[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 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리지(greasy) [플리스와시한(fleece- washed) 양모를 포함한다]	
		5101.11	깎은 양모	완전생산기준
		51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5101.21	깎은 양모	완전생산기준
		5101.29	기타	완전생산기준
		5101.30	탄화처리한 것	완전생산기준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의 부드러운 털	
		5102.11	캐시미어 산양의 것	완전생산기준
		5102.19	기타	완전생산기준
		5102.20	동물의 거친 털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03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5103.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완전생산기준
		5103.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5103.3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51.04	5104.00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5105.10	카드(card)한 양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울톱과 그 밖의 코움(comb)한 양모	
		5105.21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동물의 부드러운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105.31	캐시미어 산양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05.4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6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 한다)	
		5106.1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6.2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7		코움(comb)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 한다)	
		5107.1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7.2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 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108.10	카드(card)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8.20	코움(comb)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09.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 제5107 호 또는 제 51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 제5107 호 또는 제 51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0	511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 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1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111.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30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1.2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나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1.3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나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2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112.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12.2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2.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13	5113.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			제 52 류 면	
	52.01	5201.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52.02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202.1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 [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기타	
		5202.91	가닛스톡(garnetted stock)	완전생산기준
		5202.99	기타	완전생산기준
	52.03	5203.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소매용이 아닌 것	
		5204.11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4.20	소매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5.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6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7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8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12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5.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6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7	구성하는 단사가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8	구성하는 단사가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2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6.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6.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 (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 (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207.1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205 호 또는 제52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205 호 또는 제52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5208.1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1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1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19	그 밖의 직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표백한 것	
		5208.2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8.2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2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29	그 밖의 직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208.3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3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3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8.4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4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4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날염한 것	
		5208.5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5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4 류,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9.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1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표백한 것	
		5209.2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2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209.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9.41	평 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42	데님(deni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43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 (綾織物) [파사문직(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209.51	평 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5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5210.11	평 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10.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표백한 것	
		5210.2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210.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0.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210.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10.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5211.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1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20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211.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1.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42	데님(deni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43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211.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5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		그 밖의 면직물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5212.1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12.12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13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1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15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초과인 것	
		5212.2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22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23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2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25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			제 53 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 (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1.1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 (scutched) 훑어 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적인 것은 제외한다)	
		5301.21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 (scutched)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30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 (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2.1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 섬유[아마·대마와 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 (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3.10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 섬유[생것이거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5	5305.00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나 무사 텍스틸리스 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 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 (tow)·노일(noil)과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 (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6		아마사	
		5306.10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6.2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7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사	
		5307.10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7.2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3.08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 (paper yarn)	
		5308.10	코이어(coir)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8.20	대마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		아마직물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309.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309.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10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의 직물	
		5310.10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11	5311.00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인조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10	합성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1.20	재생 · 반(半)합성 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11	아라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2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텍스처드사	
		5402.3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2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3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4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실(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 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44	탄성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5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2.46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7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 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8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 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실(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 회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402.5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2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2.6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2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 한다]	
		5403.1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실(단사)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3.31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 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2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꼬임이 미터당 120 회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3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3.41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2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 (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모노필라멘트	
		5404.11	탄성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12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 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5	5405.00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 (straw)] (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6	5406.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4 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10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나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2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30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7.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한다)	
		5407.5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 호부터 제5110 호까지, 제5205 호부터 제5206 호까지, 제5401 호부터 제5402 호까지, 제5404 호, 제5406 호, 제5509 호부터 제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7.5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5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5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식물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61	비 (非)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식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7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7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7.7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7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7.8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8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8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8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5407.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7.9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9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9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제 5405 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한다]	
		5408.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2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8.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5408.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3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06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9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			제 55 류 인조스테이프섬유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1.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1.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1.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1.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2	5502.00	재생 · 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움(c 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503.11	아라미드(aramid)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3.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4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 [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 한다]	
		5504.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 [노일(noil) · 실의 웨이스트와 가넷스톡 (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505.10	합성섬유의 것	완전생산기준
		5505.20	재생 · 반(半)합성 섬유 의 것	완전생산기준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움 (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6.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6.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6.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7	5507.00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 [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508.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8.20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09.1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1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2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2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3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3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09.4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9.4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51	주로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5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9.53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아크릴이나 모다크릴 (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6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9.62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	
		5509.9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9.92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0.1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0.1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0.20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0.30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0.90	그 밖의 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 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511.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1.2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1.30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2.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2.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2.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3.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 [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1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513.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513.3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3.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을 초과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4.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 [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514.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2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 (綾織) [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 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4.3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514.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4.4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 [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4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11	주로 또는 전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 (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1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13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2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2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5515.9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6.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부터,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6.1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1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1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2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516.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6.3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6.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5516.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9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9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6.9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6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			제 56 류 워딩(wadding) · 펠트(felt)와 부직포, 특수사,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워딩(wadding),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	
		5601.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1.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1.30	섬유의 플록(flock) · 더스트(dust) 와 밀네프(mill nep)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2		펠트(felt) (침투 · 도포 · 피복이나 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2.10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펠트(felt)(침투·도포· 피복하거나 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602.2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2.29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이나 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1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을 초과하고 7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3.1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을 초과하고 15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1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5603.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을 초과하고 7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을 초과하고 15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9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4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 (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4.1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5	5605.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 [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 이나 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6	5606.00	짐프사(Gimped yarn)와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 5605 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 [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와 케이블 [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이나 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사이잘(sisal)마나 아가베(agave)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607.21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	
		5607.41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5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8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이나 로프로 만든 것 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 으로 만든 어망과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인조섬유로 만든 것	
		5608.11	제품으로 된 어망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8.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9	5609.00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실·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나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			제 57 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701.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1.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 · 슈맥(schumack) · 카라 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702.10	"켈렘(kelem)" · "슈맥(schumack)" · "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2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 깔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5702.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702.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4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5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702.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래[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703.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3.20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3.3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3.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개[펠트(felt)로 만든 것 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4.1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 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5	5705.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 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			제 58 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8.01		파일(pile)직물과 셔닐(chenille)직물 (제 5802 호나 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1.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면으로 만든 것	
		5801.21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1.22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23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26	셔닐(chenille)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27	경(經) 파일(pile)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인조섬유로 만든 것	
		5801.31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1.32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33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36	셔닐(chenille)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37	경(經)파일(pile)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9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2		테리타월지 (terry towelling fabric) 와 이와 유사한 테리 (terry) 직물 [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 (細幅) 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 (tuft) 한 직물 (제 57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 (terry towelling fabric) 와 이와 유사한 테리 (terry) 직물	
		5802.11	표백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2.2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 (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 (terry)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2.30	터프트(tuft) 한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3	5803.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 (細幅)직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4		튤(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스트립 (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 으로 한정하며, 제 6002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5804.10	튤(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계로 만든 레이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4.21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4.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4.30	손으로 만든 레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5	5805.00	고블랭(gobelin) 직 · 플랜더스(flanders) 직 · 오뷔송(aubusson) 직 · 보베(beauvais) 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 [예: 프티포인트 (petit point) · 십자수]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6		세폭(細幅)직물(제 5807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 직물(볼터)	
		5806.10	파일(pile) 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 직물]과 셔닐(chenille)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6.2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5806.3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6.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6.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6.40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 직물(볼덕)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7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10	직조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8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 한다), 술·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8.10	브레이드(braid) (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9	5809.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10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810.1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자수천	
		5810.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10.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10.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11	5811.00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으로 한정하며, 제 5810 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			제 59 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 (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01.1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나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5902.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02.2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 한다)	
		5903.10	폴리(염화비닐)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03.20	폴리우레탄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 깔개(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904.10	리놀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5	5905.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 한다)	
		5906.10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06.9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6.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7	5907.00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08	5908.00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나 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 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9	5909.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0	5910.0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이나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 7 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11.10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이나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 [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 (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 직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1.2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 (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엔드리스(endless)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5911.3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11.3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1.4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1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01.10	롱파일(long pile) 편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6001.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1.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1.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001.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1.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1.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2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2.4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3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 6001 호나 제 60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3.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3.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3.4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 6001 호부터 제 6004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면으로 만든 것	
		6005.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2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5.2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2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5.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5.3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3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3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5.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4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4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5.4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면으로 만든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6.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2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23	서로 다른 색질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6.2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6.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3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6.3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3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6.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6.4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4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4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401 호부터 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 제 5408 호까지,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anorak) (스키재 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 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 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1.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1.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1.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anorak) (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 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2.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2.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2.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2.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양상블(ensemble) · 재킷 · 블레이저(blazer)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3.10	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양상블 (ensemble)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3.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3.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 (shorts)	
		6103.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 (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 ·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슈트	
		6104.1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앙상블(ensemble)	
		6104.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4.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드레스	
		6104.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44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스커트와 치마바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4.5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5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5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6104.6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6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6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6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5.1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5.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와 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6.1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6.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6.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 (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107.1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7.1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107.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 · 페티코트 (petticoat) · 브리프(brief) · 팬티 · 나 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negligee) · 목욕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8.11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브리프(brief)와 팬티	
		6108.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3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108.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8.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9		티셔츠 ·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9.1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		저지(jersey) · 풀오버(pullover) · 카디 건(cardigan) · 웨이스트코트 (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 (메리야스 편물 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10.11	양모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12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10.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1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1.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1.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1.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		트랙슈트 · 스키슈트와 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트랙슈트	
		6112.1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12.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20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남성용이나 소년용 수영복	
		6112.31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여성용이나 소녀용 수영복	
		6112.41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3	6113.00	의류(제 5903 호 · 제 5906 호 또는 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4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4.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4.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14.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		팬티호스(panty hose) · 타이츠(tights) · 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 한다]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	
		6115.21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22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30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 (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115.94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15.95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96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116.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6.9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6.9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6.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7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부분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17.10	숄(shawl)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mantilla) · 베일(veil) 과 이와 유사한 물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7.80	그 밖의 부속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7.90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anorak) (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오버코트(overcoat) · 레인코트(rain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 (cape) · 클룩(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1.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1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1.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201.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9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anorak) (스키 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 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오버코트(overcoat) · 레인코트(rain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룩(cloak) 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2.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2.1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202.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9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양상블 (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 ·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 (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슈트	
		6203.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3.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양상블(ensemble)	
		6203.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3.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6203.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 · 앙상블(ensemble) · 재킷 · 블레이저(blazer) · 드레스 · 스커트 · 치마바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수영복은 제외한다)	
			슈트	
		6204.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1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1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양상블 (ensemble)	
		6204.2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킷과 블레이저 (blazer)	
		6204.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드레스	
		6204.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44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스커트와 치마바지	
		6204.5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5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5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 (shorts)	
		6204.6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6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6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6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6205.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5.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와 셔츠블라우스	
		6206.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6.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6.3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6.4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6.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 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 (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207.1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7.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207.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7.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7.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207.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7.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 와 그 밖의 조끼·슬립·페티코트 (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 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 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208.11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8.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208.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9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6209.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9.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0		의류(제 5602 호 · 제 5603 호 · 제 5903 호 · 제 5906 호 또는 제 5907 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6210.10	제 5602 호나 제 56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10.2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1.11 호부터 제 6201.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0.3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2.11 호부터 제 6202.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0.40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0.50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와 수영복, 그 밖의 의류	
			수영복	
		6211.11	남성용이나 소년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12	여성용이나 소녀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20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	
		6211.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3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11.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	
		6211.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4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2		브래지어 · 거들 · 코르셋(corset) · 브레이스(braces) · 서스펜더(suspender) · 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 없다)	
		6212.10	브래지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2.20	거들과 팬티거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2.30	코르슬렛(corselet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13		손수건	
		6213.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3.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		숄(shawl)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 (mantilla) · 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14.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40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5		넥타이류	
		6215.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15.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6	6216.00	장갑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 (제 6212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6217.10	부속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7.90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			제 63 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와 방직용 섬유제품, 냅마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	
		6301.10	전기모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3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 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1.4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9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		베드린넨(bed linen) · 테이블린넨 (table linen) ·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	
		6302.10	베드린넨(bed linen) (메리야스 편물 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 (날염된 것으로 한정한다)	
		6302.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	
		6302.3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2.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40	테이블린넨(table linen)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테이블린넨(table linen)	
		6302.5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5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6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 과 주방린넨(kitchen linen)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이와 유사한 테리(terry) 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302.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3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 과 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6303.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303.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9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 9404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침대덮개	
		6304.1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	
		6304.9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2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3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 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		포장용 빈 포대	
		6305.10	황마나 제 5303 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인조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305.32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33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것에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		방수포(tarpaulin) · 차양 및 차일, 텐트, 돛[보트용 · 세일보드(sailboard) 용 또는 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핑용품	
			방수포(tarpaulin) · 천막 및 차양	
		6306.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텐트	
		6306.2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30	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40	압축공기식 매트리스(mattres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7		그 밖의 제품 [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6307.10	마루닥이포 · 접시닥이포 · 더스터 (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7.20	구멍재킷과 구멍벨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8	6308.00	러그(rug)용 · 태피스트리(tapestry)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 또는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9	6309.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10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와 케이블의 스크랩(scrap)과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나 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10.10	선별한 것	완전생산기준
		6310.90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12 부 신발류 · 모자류 · 산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傘類) · 지팡이 · 시트 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4			제 64 류 신발류 · 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 (stitching) · 리베팅(riveting) · 네일링 (nailing) · 스크루잉(screwing) · 플러 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 한다]	
		6401.1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신발	
		6401.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 (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으로 한정한다]	
			스포츠용 신발류	
		6402.12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402.2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신발	
		6402.9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스포츠용 신발류	
		6403.12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4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5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신발류	
		6403.9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 플라스틱 ·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4.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		그 밖의 신발류	
		6405.1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2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 힐쿠션(heel cushi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 · 레깅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406.10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6.20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4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	6501.00	모체(hat-form) [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레토우(plateaux)와 망송(manchon) [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2	6502.00	모체(hat-shape) [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4	6504.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5	6505.00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직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 (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5.06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6.10	안전모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6506.91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6.9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5.07	6507.00	헤드밴드 · 내장재 · 커버 · 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 · 모자의 프레임(frame) · 첩과 턱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			제 66 류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6.01		산류(傘類) [지팡이 겸용 우산 · 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를 포함한다]	
		6601.1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6601.91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2	6602.00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3		제 6601 호나 제 6602 호의 물품의 부분품 · 트리밍(trimming)과 부속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603.20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			제 67 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7.01	6701.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 및 깃촉(quill)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2		인조 꽃·잎과 과실 및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 또는 과실로 만든 제품	
		6702.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2.9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3	6703.00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		가발·가수염·눈썹 및 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6704.11	전체가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7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20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704.9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3 부 돌 · 플라스터 (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68			제 68 류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	6801.00	포석 · 연석 및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 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		가공한 석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 6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 [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 · 조각 및 가루	
		6802.10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 · 조각 및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석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으로 한정한다)	
		6802.21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및 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23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29	그 밖의 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6802.91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및 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2	그 밖의 석회질 암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3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2.99	그 밖의 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3	6803.00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또는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		밀스톤(millstone) ·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 · 베틀기용 · 광택용 · 정형용 또는 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 · 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器)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04.10	밀스톤 (millstone) 과 그라인드스톤 (grindstone) [밀링 (milling) 용 · 그라인딩 (grinding) 용 또는 펄핑 (pulp) 용 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밀스톤 (millstone) · 그라인드스톤 (grindstone) · 그라인딩 휠 (grinding wheel) 과 이와 유사한 것	
		6804.21	합성 또는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 (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22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 (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나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23	천연석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4.30	수지석 (手砥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5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 · 종이 · 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이나 봉합한 것 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 인지에 상관없다)	
		6805.1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5.2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5.3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06		슬래그 울(slag wool) · 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 팽창점토 · 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 · 방음용이나 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 6811 호나 제 6812 호 또는 제 69 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6.10	슬래그 울(slag wool) · 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 · 시트(sheet) 모양 또는 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6.20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 팽창점토 · 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7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 [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6807.10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8	6808.00	패널 · 보드 · 타일 · 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 · 짚 또는 목재의 대팻밥 · 칩 · 파티클(particle) · 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 · 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09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제품	
			보드·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은 제외한다)	
		6809.11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09.90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또는 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타일·판석·벽돌과 이와 유사한 제품	
		6810.11	건축용 블록과 벽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제품	
		6810.91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공사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 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1.40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1.81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1.82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11.89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또는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 · 직물 · 의류 · 모자 · 신발 · 개스킷(gasket)]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6811 호나 제 6813 호의 물품은 제외 한다)	
		6812.80	청석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6812.91	의류 · 의류 부속품 · 신발과 모자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2	종이 · 표지용 판지와 펄트(fel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3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3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 · 롤 · 스트립(strip) · 세그먼트 · 디스크(disc) · 와셔(washer) · 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 · 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 · 그 밖의 광물성 재료 또는 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3.20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3.81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 과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13.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4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4.10	판·시트(sheet)와 스트립(strip) (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과 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10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20	이탄(泥炭)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제품	
		6815.91	마그네사이트·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8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			제 69 류 도자제품	
	69.01	6901.00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 [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 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9.02		내화벽돌 · 내화블록 · 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2.10	마그네슘 · 칼슘 또는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 · 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2.20	알루미나 · 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 · 도가니 · 머플 · 노즐 · 플러그 · 서포트 · 큐펠(cupel) · 관(管) · 쉬드(sheath) · 막대(rod)] (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10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20	알루미나(Al_2O_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_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 · 바닥깔개용 블록 · 서포트타일(support tile) 또는 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	
		6904.10	건축용 벽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5		기와 · 굴뚝통 · 굴뚝갓 · 굴뚝용 내장재 · 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6905.10	기와(지붕타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6	6906.00	도자제의 관(管) · 도관(導管) · 흙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 · 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907.10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9.08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 · 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 (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908.10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 (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9		실험실용 · 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 · 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실험실용 · 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6909.11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9.12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 · 세면대 · 세면대용 받침 · 목욕통 · 비데 · 수세식 변기통 · 수세식 변기용 물통 · 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0.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	
		6911.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2	6912.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3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913.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4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6914.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69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	7001.00	깨진 유리나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 (waste)·스크랩(scrap), 유리 파(塊)	완전생산기준
	70.02		유리로 만든 구(球)[제 7018 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 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2.10	구(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20	막대(ro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관(管)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02.31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32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인지에 상관 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망입(網入)하지 않은 시트(sheet) 유리	
		7003.12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이나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2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3.30	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4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04.20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이나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4.90	그 밖의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10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	
		7005.21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이나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5.30	망입(網入)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6	7006.00	제 7003 호·제 7004 호 또는 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강화 안전유리	
		7007.11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접합 안전유리	
		7007.21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8	7008.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09.1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009.91	틀이 붙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09.92	틀이 붙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 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이나 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0.10	앰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20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1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 (밸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1.10	전등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1.20	음극선관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 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 7010 호나 제 7018 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3.10	유리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22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28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33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37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식탁용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 이나 주방용 유리제품(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4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3.42	선팅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유리제품	
		7013.9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4	7014.00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 7015 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5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6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 셸(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7016.1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7		실험실용·위생용 또는 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7017.10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7.2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 · 모조 진주 · 모조 귀석이나 반귀석과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및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 (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7018.10	유리로 만든 비드(bead) · 모조 진주 · 모조 귀석이나 반귀석과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8.20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 · 직물)	
			슬리버(slivier) · 로빙(roving) · 실과 단연사	
		7019.11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12	로빙(rov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얇은 시트(sheet)(보일) · 웹(web) · 매트(mat) · 매트리스(mattress) · 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	
		7019.31	매트(m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32	얇은 시트(sheet)(보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40	로빙(roving)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직물	
		7019.51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52	폭이 30 센티미터 초과인 것 (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0.20	7020.0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4 부 천연진주 또는 양식진주 · 귀석 또는 반귀석 · 귀금속 · 귀금 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			제 71 류 천연진주 또는 양식진주 · 귀석 또는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 장식용품, 주화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펴 것 ·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펴 것을 포함한다)	
		7101.10	천연진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양식진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01.21	가공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1.22	가공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7102.10	선별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공업용	
		7102.2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 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공업용이 아닌 것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 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쥬 얼 ·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 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출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쥬얼 것을 포함한다)	
		7103.10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7103.91	루비 · 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3.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04		합성 또는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 (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쥔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쥔 것을 포함한다)	
		7104.10	압전기용 석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4.20	기타(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5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7105.10	다이아몬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6.10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106.91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6.92	반가공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7	7107.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 한다)	
			화폐용이 아닌 것	
		7108.11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20	화폐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9	7109.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 (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 한다)	
			플라티늄(platinum)	
		7110.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팔라듐(palladium)	
		7110.2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로듐(rhodium)	
		7110.3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이리듐 (iridium) · 오스뮴 (osmium) 및 루테튬 (ruthenium)	
		7110.4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1	7111.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 · 은 또는 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7112.3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완전생산기준
			기타	
		7112.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7112.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7112.99	기타	완전생산기준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3.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3.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4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 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4.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4.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4.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5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7115.10	축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 (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16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 (천연의 것, 합성 또는 재생한 것)의 제품	
		7116.10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6.20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또는 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7.11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8		주화	
		7118.1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1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5 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72			제 72 류 철강	
	72.01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 (spiegeleisen) [피그(pig) · 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1.1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1.2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1.50	합금선철,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		합금철 (ferro-alloy)	
			페로망간	
		7202.1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페로실리콘 (ferro-silicon)	
		7202.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 분의 5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3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페로크로뮴 (ferro-chromium)	
		7202.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5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60	페로니켈 (ferro-nicke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70	페로몰리브데늄 (ferro-molybden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80	페로텅스텐 (ferro-tungsten) 과 페로실리코 텅스텐 (ferro-silico-tungste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	
		7202.91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2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3	페로니오븀(ferro-niob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 [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분의 99.94 인 철[럼프(lump)·펠릿(pellet) 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 한다]	
		7203.1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4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scrap ingot)	
		7204.1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완전생산기준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7204.21	스테인리스강의 것	완전생산기준
		7204.2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4.3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41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 및 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7204.49	기타	완전생산기준
		7204.5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완전생산기준
	72.05		알갱이와 가루 [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7205.10	알갱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가루	
		7205.21	합금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 7203 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10	잉곳(ing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7.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7.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7.2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10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산세(酸洗)한 것으로 한정한다]	
		7208.25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26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27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36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37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38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39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4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5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5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5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8.5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코일 모양인 것으로 냉간압연 (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1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9.16	두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9.1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9.1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 (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2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9.26	두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9.2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9.2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 (clad) · 도금 또는 도포한 것으로 한정 한다]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11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12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2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합석판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3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41	물결 모양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5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알루미늄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61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0.70	페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13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 (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 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 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1.14	기타(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23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2.1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2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3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4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5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2.60	클래드(clad)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3.1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2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213.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 발(熱間引拔) 또는 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10	단조(鍛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4.3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214.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10	쾌삭강(快削鋼)의 것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 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 또는 제 721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5.5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 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 또는 제 721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3 호 또는 제 721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6.10	유(U)형강·아이(I)형강 또는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21	엘(L)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22	티(T)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유(U)형강·아이(I)형강 또는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31	유(U)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32	아이(I)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33	에이치(H)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40	엘(L)형강이나 티(T)형강 [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5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형강(形鋼) [냉간(冷間) 성형이나 냉간(冷間) 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6.6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216.9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 성형이나 냉간(冷間) 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1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2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3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으로 한정한다],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8.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 (primary form) 형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218.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1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1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1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은 제외한다)	
		7219.2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2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2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2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9.3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9.32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33	두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34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35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 한다)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20.1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 또는 제 72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0.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 또는 제 72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0.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 또는 제 72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18 호 또는 제 72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1	7221.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22.11	횡단면이 원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2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 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30	그 밖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2.4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3	7223.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4.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한다)	
			규소전기강의 것	
		7225.11	방향성(方向性)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2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2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25.3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 (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2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5.40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 (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2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5.5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225.91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92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 한다)	
			규소전기강의 것	
		7226.11	방향성(方向性)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24 호 또는 722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24 호 또는 722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6.20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24 호 또는 722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26.9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224 호 또는 722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226.9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7.10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8.10	고속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20	실리코망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30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40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5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60	그 밖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7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8.80	중공(中空)드릴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7229.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2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 (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철강으로 만든 용접된 형강(形鋼)	
		7301.10	널말뚝(sheet pil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1.2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 [레일(rail) · 체크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 · 스위치 블레이드 (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 받침목 (크로스 타이) · 이음매판(fish-plate) · 좌철(座鐵) · 좌철(座鐵)썰기 · 밑판(sole plate) (베이스플레이트) · 레일클립 · 받침판(bedplate) · 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7302.10	레일(rai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3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 (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 (crossing piec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4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3	7303.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4.11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튜브와 드릴파이프	
		7304.22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3	그 밖의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4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3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 (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한다)	
		7304.4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 (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5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 [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5.11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12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2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05.31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예: 오픈심(open seam) 또는 용접· 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6.1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과 튜빙	
		7306.2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3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4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5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 한다)	
		7306.61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6.69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예: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주조한 연결구류	
		7307.11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7.21	플랜지(flan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22	나선가공한 엘보(elbow) · 벤드(bend) 및 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23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307.91	플랜지(flan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92	나선가공한 엘보(elbow) · 벤드(bend) 및 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93	바트(butt)용접용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 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 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 ·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8.10	다리와 교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20	탑과 격자주(格子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3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40	비계(飛階)·차단기·지주 또는 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09	7309.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 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 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10.1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용적이 50 리터 미만인 것	
		7310.21	납땀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1	7311.00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 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 · 로프 · 케이블 · 엮은 밴드 · 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2.10	연선(stranded wire) · 로프 및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3	7313.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銃), 대 · 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 한다] · 그릴 · 망 및 울타리,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직조한 클로스(cloth)	
		7314.12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14.14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20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 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14.31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클로스(cloth)·그릴·망 및 울타리	
		7314.41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42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4.5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link chain) 과 그 부분품	
		7315.11	롤러체인(roller ch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12	그 밖의 체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15.19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20	스키드체인(skid ch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체인	
		7315.81	스터드링크(stud-lin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82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5.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6	7316.00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7	7317.00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 (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 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 (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 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 [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 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나선가공한 제품	
		7318.11	코치 스크루(coach 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2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18.13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4	셀프타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5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 [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6	너트(n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7318.21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2	그 밖의 와셔(was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3	리벳(riv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4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돛바늘 ·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7319.40	안전핀과 그 밖의 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20.10	관상 스프링과 그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0.20	나선용 스프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 · 레인지(range) · 화상(火床) · 조리기(중양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바비큐(barbecue) · 화로 · 가스풍로 · 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7321.11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겸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12	액체연료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19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기구	
		7321.81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겸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82	액체연료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89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22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양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22.11	주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3.10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323.91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2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3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3.9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2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4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목욕통	
		7324.21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4.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5.1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325.91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 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26.11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 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2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3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			제 74 류 구리와 그 제품	
	74.01	7401.00	구리의 매트(mat), 시멘트동(침전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2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정제한 구리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12	와이어바(wire-ba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13	빌릿(bill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구리합금	
		7403.21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22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3.29	그 밖의 구리합금[제 7405 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4	7404.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완전생산기준
	74.05	7405.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6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406.1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6.20	층상조직인 가루,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407.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7.21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8		구리의 선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8.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4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8.21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408.22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 으로 만든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4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4.09		구리의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9.1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09.2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7409.3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4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09.90	그 밖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 한다)가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1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410.1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뒷면을 붙인 것	
		7410.2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410.2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11		구리로 만든 관(管)	
		7411.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1.21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1.22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2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예: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7412.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412.2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4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4.13	7413.00	구리로 만든 연선 · 케이블 · 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15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 볼트(bolt)· 너트(nut)·스크루훅 (screw hook)·리벳(rivet)· 코터(cotter)·코터핀(cotter- pin)·와셔(washer) [스프링와셔 (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	못과 압정, 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나선가공을 하지 않은 그 밖의 물품	
		7415.21	와셔(washer) [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나선가공한 물품	
		7415.33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8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 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18.10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 (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8.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9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419.10	체인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419.91	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41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75.01		니켈의 매트(mat)·소결(燒結)한 산화니켈 및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7501.10	니켈의 매트(m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1.20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 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2		니켈의 괴(塊)	
		7502.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2.20	니켈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3	7503.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5.04	7504.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		니켈의 봉·프로파일(profile) 및 선(線)	
			봉과 프로파일(profile)	
		7505.1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1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선(線)	
		7505.2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5.2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6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7506.1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6.2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7		니켈로 만든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 [예: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관(管)	
		7507.1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7.1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7.20	관(管)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8		니켈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508.10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 및 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5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알루미늄의 괴(塊)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1.20	알루미늄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2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76.03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603.10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3.20	충상조직인 가루,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604.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4.21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5		알루미늄의 선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5.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6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05.2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6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4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	
		7606.11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6.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606.91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6.9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607.11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7.20	뒷면을 붙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08.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8.2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09	7609.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예: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 (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 탑 · 격자주(格子柱) · 지붕 · 지붕 틀 ·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 난간 ·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 · 봉 · 프로파일 (profile) · 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0.10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1	7611.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 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 · 드럼 · 캔 · 상자과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12.10	연질의 튜브형 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3	7613.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4.1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76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0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5.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16.10	못 · 압정 · 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 스크루(screw) · 볼트(bolt) · 너트(nut) · 스크루 훅(screw hook) · 리벳(rivet) · 코터(cotter) · 코터핀(cotter-pin) · 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616.91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 그릴 · 망 및 울타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6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			제 78 류 납과 그 제품	
	78.01		납의 괴(塊)	
		7801.10	정제한 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7801.91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2	7802.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78.04		납의 판(sheet) · 스트립 및 박(箔), 가루와 플레이크(flake)	
			판(sheet) · 스트립 및 박(箔)	
		7804.11	시트(sheet) · 스트립 및 박(箔)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804.20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8.06	7806.00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79.01		아연의 피(塊)	
			합금하지 않은 아연	
		7901.11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1.20	아연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2	7902.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79.03		아연의 더스트(dust)·가루 및 플레이크(flake)	
		7903.10	아연 더스트(dus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4	7904.00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 및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5	7905.00	아연의 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79.07	7907.00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주석의 피(塊)	
		8001.10	합금하지 않은 주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1.20	주석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0.02	8002.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0.03	8003.00	주석의 봉·프로파일(profile) 및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0.07	8007.00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1			제 81 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1.10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8101.94	텅스텐의 괴(塊) [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6	선(線)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1.97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01.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		몰리브데넘과 그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2.10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8102.94	몰리브데넘의 괴(塊) [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102.95	붕[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및 박(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6	선(線)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2.97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02.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20	탄탈륨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3.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0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마그네슘의 괴(塊)	
		8104.11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8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04.30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 · 연삭설(tuming) 및 알갱이,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1.05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 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5.2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 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의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5.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0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6	8106.00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비스무트와 그 제품 :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웨이스트와 스크랩 : 완전생산기준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7.20	카드뮴의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7.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07.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8.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08.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109.20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09.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0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0.10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0.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10.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1	8111.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망간과 그 제품 :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웨이스트와 스크랩 : 완전생산기준
	81.12		베릴륨 · 크로뮴 · 게르마늄 · 바나듐 · 갈륨 · 하프늄 · 인듐 · 니오븀(컬럼븀) · 레늄 및 탈륨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베릴륨	
		8112.12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13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1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크로뮴	
		8112.21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2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11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탈륨	
		8112.51	괴(塊),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2.5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완전생산기준
		8112.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8112.92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 비금속(卑金屬)의 괴와 가루 :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웨이스트와 스크랩 : 완전생산기준
		8112.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1.13	8113.00	서멧(cermet)과 그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서멧과 그 제품 :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웨이스트와 스크랩 : 완전생산기준
82			제 82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 · 도구 · 칼붙이 · 스푼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1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 · 삽 · 곡괭이 · 픽스(picks) · 팽이 · 포크와 쇠스랑, 도끼 · 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 · 초절기(草切機) · 울타리 전단기(剪斷機) · 제재(製材)용 썰기와 그 밖의 농업용 · 원예용 또는 임업용 공구	
		8201.10	가래와 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30	곡괭이 · 픽스(picks) · 팽이 및 쇠스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1.40	도끼 · 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5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6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 · 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1.90	그 밖의 농업용 · 원예용 또는 임업용 수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 [슬리팅(slitting) · 슬로팅(slotting)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2.10	수동식 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2.20	띠톱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원형 톱날[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	
		8202.31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2.3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2.40	체인톱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톱날	
		8202.91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3		줄 · 플라이어 (plier) [절단용 플라이어 (plier)를 포함한다] · 집게 · 핀셋 · 금속 절단용 가위 · 파이프커터 (pipe-cutter) · 볼트크로퍼 (bolt cropper) · 천공편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10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20	플라이어 (plier) [절단용 플라이어 (plier)를 포함한다] · 집게 · 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3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3.40	파이프커터 (pipe-cutter) · 볼트크로퍼 (bolt cropper) · 천공편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4		수동식 스패너 (spanner)와 렌치 (wrench) (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 (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 (spanner socket) (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동식 스패너 (spanner)와 렌치 (wrench)	
		8204.11	조절할 수 없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4.12	조절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4.20	호환성 스패너소켓 (spanner socket) (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5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 · 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8205.10	드릴링 · 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20	망치(hammer, sledge hamm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30	목재 가공용 대패 · 끌 · 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4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8205.51	가정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60	블로램프(blow lam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70	바이스(vice) · 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5.90	기타(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6	8206.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예:프레싱 (pressing) 용 · 스탬핑 (stamp ing) 용 · 펀칭 (punching) 용 · 태핑(tapping) 용 · 드레딩(threading) 용 · 드릴링 (drilling) 용 · 보링 (boring) 용 · 브로칭 (broaching) 용 · 밀링 (milling) 용 · 터닝 (turning) 용 또는 스크루드라이빙 (screw driving) 용] [금속의 인발 (引拔) 용이나 압출용 다이 (die) 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	
		8207.13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20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 (d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30	프레싱 (pressing) 용 · 스탬핑 (stampin g) 용 또는 펀칭 (punching) 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40	태핑 (tapping) 용이나 드레딩 (threading) 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50	드릴링 (drilling) 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60	보링 (boring) 용이나 브로칭 (broaching) 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70	밀링 (milling) 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7.80	터닝 (turning) 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7.90	그 밖의 호환성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8208.10	금속 가공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20	목재 가공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3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40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09	8209.00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0	821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		칼(툼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 8208 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	
		8211.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8211.91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92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93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1.94	칼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11.9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212.10	면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2.2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2.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3	8213.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4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10	종이용 칼·편지 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4.2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5		스푼·포크·국자·스키머(skimmer)·케이크서버(cake-server)·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15.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5.2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2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			제 83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1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 (열쇠식·다이얼식 또는 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8301.10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1.2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1.3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1.40	그 밖의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1.5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1.6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1.7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0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e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10	경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20	카스터(c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41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42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5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2.60	자동도어 폐지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3	8303.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 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 박스(strong-box) 및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04	8304.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 · 카드인덱스함 · 페이퍼 트레이(paper tray) · 페이퍼 레스트(paper rest) · 펜 트레이(pen tray) ·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 (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 서신용 클립 · 레터코너(letter corner) · 서류용 클립 · 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예: 사무실용 · 가구류용 · 포장용의 것)	
		8305.1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5.2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 · 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 · 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306.10	벨 · 징과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8306.2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6.30	사진틀 · 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7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브(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8307.10	철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7.9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8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 · 걸쇠가 붙은 프레임 · 버클(buckle) · 버클(buckle)걸쇠 · 훅(hook) · 아이 (eye) · 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 신발류 · 차양 · 핸드백 · 여행 구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비금속으로 만든 구슬과 스팅글(spangle)	
		8308.10	훅(hook) · 아이(eye) 및 아일릿(eyel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8.2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8.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09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캡과 뚜껑[병마개·스크루캡(screw cap) 및 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병용 캡슐·나선형 마개·마개용 커버· 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8309.1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0	83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 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 (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1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 또는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8311.1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용접봉[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 용접용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1.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플럭스(flux)를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311.3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봉과 선[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납접 또는 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6 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재생기 그리고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및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4			제 84 류 원자로 · 보일러 · 기계류, 이들의 부분품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8401.10	원자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1.2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1.3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1.40	원자로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과열수보일러(super- heated water boiler)	
			증기발생보일러	
		8402.11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12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19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02.20	과열수보일러 (super-heated water boiler)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3		중양난방용 보일러(제 8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8403.10	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4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화수기),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404.10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4.2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5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405.10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6		증기터빈	
		8406.10	선박추진용 터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터빈	
		8406.81	출력이 4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6.82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407.10	항공기용 엔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선박추진용 엔진	
		8407.21	아웃보드(outboard) 모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2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왕복 피스톤엔진	
		8407.31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2	실린더용량이 50 시시를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3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를 초과하고 1,000 시시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90	그 밖의 엔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8408.10	선박추진용 엔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20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90	그 밖의 엔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		제 8407 호나 제 8408 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09.10	항공기 엔진용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409.91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9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		수력터빈 · 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수력터빈과 수차	
		8410.11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0.12	동력이 1,00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0.13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0.90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터보제트	
		8411.11	추진력이 25 킬로뉴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12	추진력이 25 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터보프로펠러	
		8411.21	출력이 1,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22	출력이 1,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가스터빈	
		8411.81	출력이 5,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82	출력이 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2		그 밖의 엔진과 모터	
		8412.10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8412.2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2.3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2.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 없다), 액체엘리베이터	
			펌프(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추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413.11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 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20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나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 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40	콘크리트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50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60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70	그 밖의 원심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펌프, 액체엘리베이터	
		8413.81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82	액체엘리베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3.91	펌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3.92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10	진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4.2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4.3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4.40	예인용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팬	
		8414.51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 용 또는 지붕용 팬(출력이 125 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 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4.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4.60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 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4.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5.10	창형이나 벽형(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5.2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8415.81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5.82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5.83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6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 또는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키(stoker) [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10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6.20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6.30	기계식 스토키(stoker) [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7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7.10	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 (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7.2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7.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8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8.10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가정형 냉장고	
		8418.21	압축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8.3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8.4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8.50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	
		8418.61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8.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418.91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 또는 냉각과 같은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실험실장치 [전기가열식인지에 상관없고 (제 8514 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8419.11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20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건조기	
		8419.31	농산물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32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 또는 판지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40	증류기나 정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9.50	열교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60	기체 액화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기기	
		8419.81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1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1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420.91	실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11	크림분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1.12	의류탈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1.21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8421.31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1.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421.9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2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 또는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합용·실링(sealing)용 또는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접시세척기	
		8422.11	가정형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2.2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2.30	병·깡통·상자·자루 또는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합용·실링(sealing)용 또는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2.40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3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나 검사기를 포함한다], 각종 저울 추	
		8423.1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3.20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3.3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 [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중량 측정기기	
		8423.81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3.82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3.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3.90	각종 저울 추, 저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 또는 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1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4.20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4.3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기기	
		8424.81	농업용이나 원예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4.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5		폴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 [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틴(capstan), 잭(jack)	
			폴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 [스킵호이스트(skip hoist)나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8425.11	전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윈치(winch), 캡스틴(capstan)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5.31	전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잭(jack)과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	
		8425.41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5.42	그 밖의 잭(jack)과 호이스트 (hoist)(액압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6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 (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와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천장주행 크레인·트랜스포터 크레인·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교각(橋脚)형 크레인·이동식양하대 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426.11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6.12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6.20	타워크레인(tower cra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6.30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 한다]	
		8426.41	타이어가 달린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기계	
		8426.91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7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 한다]	
		8427.10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7.20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7.90	그 밖의 작업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28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 또는 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 eferic)]	
		8428.10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20	뉴매틱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8.31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2	그 밖의 버켓형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3	그 밖의 벨트형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40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moving walkway)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60	텔레페릭(teleferic)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 푼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90	그 밖의 기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 · 앵글도저(angledozer) · 그레이더(grader) · 레벨러(leveller) · 스크래퍼(scraper) · 메커니컬셔블 (mechanical shovel) · 엑스커베이터(excavator) · 셔블로더(shovel loader) · 탐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불도저(bulldozer)와 앵글도저(angledozer)	
		8429.11	무한 궤도식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1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2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9.30	스크래퍼 (scraper)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40	탬핑머신 (tamping machine) 과 로드롤러 (road roller)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메커니컬셔블 (mechanical shovel), 엑스커베이터 (excavator) 와 셔블로더 (shovel loader)	
		8429.51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front-end shovel loader)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2	360 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		그 밖의 이동용 · 정지(整地)용 · 지균(地均)용 · 스크래핑 (scrapping) 용 · 굴착용 · 탬핑 (tamping) 용 · 콤팩팅 (compacting) 용 · 채굴용 또는 천공용 기계 (토양용 · 광석용 또는 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향타기와 향발기, 스노플라우 (snow-plough) 와 스노블로어 (snow-blower)	
		8430.10	향타기 (杭打機) 와 향발기 (抗拔機)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20	스노플라우 (snow-plough) 와 스노블로어 (snow-blower)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석탄이나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8430.31	자주식 (自走式)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0.3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	
		8430.41	자주식(自走式)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4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5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8430.61	탐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6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		제 8425 호부터 제 8430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10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20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428 호의 기계의 것	
		8431.31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3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8426 호 · 제 8429 호 또는 제 8430 호의 기계의 것	
		8431.41	버켓(bucket) · 셔블(shovel) · 그랩(g rab) 과 그립(grip)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2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 (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3	소호 제 8430.41 호나 제 8430.49 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		농업용 · 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	
		8432.10	플라우(쟁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하로우(쇄토기) · 스카리파이어 · 컬티 베이터(중경기) · 제초기와 호우	
		8432.21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2.30	파종기 · 식부기(植付機) 및 이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2.40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2.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3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제 8437 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	
		8433.11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2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3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4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수확기, 탈곡기	
		8433.51	수확·탈곡 겸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52	그 밖의 탈곡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53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 [근채(根菜) 수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60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4.10	착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4.20	낙농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5		포도주·사과술·과실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press)·크러셔(crusher)와 이와 유사한 기계	
		8435.10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6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10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21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6.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436.91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7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 (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 (농장형은 제외한다)	
		8437.10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 (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7.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8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8438.10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8.20	과자·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8.30	설탕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8.40	양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8.50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8.60	과실·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8.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나 종이 또는 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	
		8439.1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9.20	종이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9.30	종이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439.91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3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10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1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 한다)	
		8441.10	절단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1.20	종이백·봉지 또는 봉투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1.30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 드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1.40	제지용 펄프·종이 또는 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1.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2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 및 장비(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공작기계는 제외 한다),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2.30	기계류·장치 및 장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2.40	위의 기계류·장치 또는 장비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2.50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 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8443.11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3.12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않은 상태의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13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14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15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16	곡면인쇄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17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 및 팩시밀리 (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443.31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 되며, 인쇄·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32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과 부속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3.91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4	8444.00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늘림(drawing)용·텍스처(texture)용 또는 절단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合絲機) 또는 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 [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 8446 호나 제 8447 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방적준비기계	
		8445.11	카드기(card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5.12	코밍기(comb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5.13	연조기나 조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5.20	방적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5.30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5.40	권사기(捲絲機) [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6		직기(직조기)	
		8446.1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 (셔틀형으로 한정한다)	
		8446.21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6.30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 [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7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및 짐프사(gimped yarn) · 튜(tulle) · 레이스 · 자수천 · 트리밍 (trimming) · 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와 터프팅(tufting) 기계	
			원형 편기	
		8447.11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7.12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7.20	횡(橫) 편직기, 스티치 본딩기 (stitch-bond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8		제 8444 호 · 제 8445 호 · 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 · 자카드기 · 자동정지기 · 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 8444 호 · 제 8445 호 · 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핀들과 스핀들 플라이어 · 침포 · 코움(comb) · 방사니플 · 셔틀 · 종광(heald) 및 종광 프레임 · 메리야스용 바늘]	
			제 8444 호 · 제 8445 호 · 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8448.11	도비(dobby)기 및 자카드기,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 · 복사용 · 천공용 또는 조립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8.20	제 8444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445 호의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31	침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8.32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8.33	스핀들 · 스핀들 플라이어 · 스피닝 링 및 링트래블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직기(직조기)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8.42	직조기용 바디 · 중광(heald) 과 중광 프레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447 호의 기계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51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 · 바늘과 그 밖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8.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49	8449.00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 · 완성이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모자 제조용 형(型)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 및 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450.11	완전자동 세탁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0.12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0.20	1 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1		세탁용 · 클리닝용 · 쥐어짜기용 · 건조용 · 다림질용 · 프레스용[퓨징프레스 (fusing press)를 포함한다] · 표백용 · 염색용 · 드레싱용 · 완성가공용 · 도포용 또는 침지(沈漬)용 기계류[제 8450 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 · 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갈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 · 풀기(unreeling)용 · 접음용 · 절단용 또는 핑킹(pinking)용 기계	
		8451.10	드라이클리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건조기	
		8451.21	1 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1.30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1.40	세탁기 · 표백기 또는 염색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1.50	감기(reeling)용 기계 · 풀기 (unreeling)용 기계 · 접음기 · 절단기 또는 핑킹(pinking)용 기계 (직물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1.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2		재봉기(제 8440 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밀판 및 덮개, 재봉기용 바늘	
		8452.10	가정형 재봉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재봉기	
		8452.21	자동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2.30	재봉기용 바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2.90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밀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3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나 가공기계 또는 원피나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 또는 수선용 기계(재봉기는 제외한다)	
		8453.10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나 가공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3.20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3.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4		전로·레이들(ladle)·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	
		8454.10	전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4.20	잉곳(ingot) 용 주형과 레이들(ladl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4.30	주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10	관 압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압연기	
		8455.21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5.22	냉간(冷間) 압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5.30	압연기용 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5.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56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또는 광자빔·초음파· 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워터제트 절단기	
		8456.1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2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56.30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56.90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7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 (machining centre)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 (unit construction machine) (싱글스테이션) 및 멀티스테이션 (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 (transfer machine)	
		8457.10	머시닝 센터 (machining cent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 (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7.2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 (unit construction machine) (싱글스테이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 (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7.30	멀티스테이션 (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 (transfer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 (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8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수평 선반	
		8458.1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선반	
		8458.9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9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 [웨이타입 (way-type) 유닛헤드머신 (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 (drilling) · 보링 (boring) · 밀링 (milling) · 나선가공 또는 태핑 (tapping)에 사용되는 것 [제 8458 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 한다)은 제외한다]	
		8459.10	웨이타입 (way-type) 유닛헤드머신 (unit head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드릴링머신 (drilling machine)	
		8459.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 (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보링밀링머신 (boring-milling machine)	
		8459.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 (CNC) 시스템이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9.40	그 밖의 보링머신(bor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무릎형 밀링머신(milling machine)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9.5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그 밖의 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6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59.70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tapp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0		디버링(deburring) · 샤프닝(sharpening) · 그라인딩(grinding) · 호닝(honing) · 래핑(lapping) · 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 연마재 또는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 (제 8461 호의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평면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 밀리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 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0.1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그 밖의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 밀리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 한다)	
		8460.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샤프닝머신(sharpening machine) (공구나 커터를 연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0.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0.40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1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 ·슬로팅(slotting)용· 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 어연삭용 또는 기어완성가공용· 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61.20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1.3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1.40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1.50	톱기계나 절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2		단조(鍛造)용 · 해머링(hammering)용 또는 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 · 접음용 · 교정용 · 펼침용 · 전단용 · 편칭용 또는 낫칭 (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 (프레스를 포함한다),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2.10	단조기(鍛造機) 또는 다이스탬핑기 (die-stamping machine) (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굽힘기·접음기·교정기 또는 펼침기 (프레스를 포함한다)	
		8462.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2.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편칭기나 낫칭기(notching machine) (프레스를 포함하며, 편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2.4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기타	
		8462.91	액압 프레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제 8537 호 또는 제 9032 호 제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하에 컴퓨터 수치 제어(CNC) 시스템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에 한한다.
	84.63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3.10	드로우벤치(draw-bench) [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 으로 한정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3.20	나사 전조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3.30	선 가공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3.90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4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나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기계	
		8464.10	톱기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4.20	연마기나 광택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4.90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5		목재·코르크·뼈·경질 고무·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 ·접착용 또는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8465.10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 (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465.91	톱 기계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5.92	평삭기 · 밀링머신(milling machine) 또는 몰딩머신(moulding machine) (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3	연삭기 · 샌딩머신(sanding machine) 또는 광택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4	굽힘기나 조립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5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6	스플리팅(splitting)기 · 슬라이싱(slicing)기 또는 박피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6		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 또는 툴홀더(tool holder)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 (tool holder)	
		8466.10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6.20	가공용 홀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6.30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6.91	제 8464 호의 기계용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2	제 8465 호의 기계용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3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의 기계용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4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4.67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압축공기식의 것	
		8467.11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전동기를 갖춘 것	
		8467.21	각종 드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7.22	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7.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공구	
		8467.81	체인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7.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467.91	체인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7.92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8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 (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 8515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8.10	수지식 취관(吹管)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8.20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8.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69	8469.00	타자기(제 8443 호의 프린터기는 제외한다), 워드프로세싱머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0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 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8470.10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전자계산기	
		8470.21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0.30	그 밖의 계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0.50	금전 등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1.49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 8471.41 호나 제 8471.49 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1.60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1.70	기억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1.8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2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나 스텐실(stencil) 등사기·주소인쇄기· 현금 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 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연필깎이· 천공기 또는 지철기(stapling machine)]	
		8472.10	등사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2.30	우편물의 분류기나 접음기 또는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봉합기 또는 실링기 그리고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3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8473.10	제 8469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8470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21	소호 제 8470.10 호·제 8470.21 호 또는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3.30	제 8471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3.40	제 8472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3.50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4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 파쇄기·분쇄기·혼합기 또는 반죽기 (고체 모양·분말 모양 또는 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형입기 또는 성형기 (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 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 석고 또는 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 (砂型)의 성형기(成形機)	
		8474.1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 또는 세척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4.20	파쇄기나 분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혼합기나 반죽기	
		8474.31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4.32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4.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4.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5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나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flashbulb) (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5.1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나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flashbulb) (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5.21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 또는 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음료 자동판매기	
		8476.21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기계	
		8476.81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6.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7.10	사출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7.20	압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7.30	취입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7.4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성형기	
		8477.51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 또는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7.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7.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8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8.10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10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2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 또는 조제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9.3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4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50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60	증발식 에어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탑승교	
		8479.71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기기	
		8479.81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82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 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 ·균질기·유화기 또는 교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7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10	금속 주조용 주형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0.20	주형 베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0.30	주형 제조용 모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성형용 주형	
		8480.41	사출식이나 압축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0.50	유리 성형용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0.6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71	사출식이나 압축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0.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1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10	감압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1.20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1.30	체크(논리턴)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1.40	안전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2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10	볼베어링(ball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2.20	원추형 롤러베어링 (roller bearing) [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 (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2.30	구형 롤러베어링 (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2.40	니들 롤러베어링 (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2.5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 (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2.80	그 밖의 베어링 [볼베어링 (ball bearing) 과 롤러베어링 (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482.91	볼 · 니들 및 롤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3		전동축 [캠샤프트 (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 (crank shaft)를 포함 한다] 과 크랭크 (crank), 베어링하우징 (bearing housing) 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plain shaft bearing), 기어 (gear)와 기어링 (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 (roller screw), 기어박스 (gear box)와 그 밖의 변속기 [토크컨버터 (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 (flywheel) 과 폴리 (pulley) [폴리블록 (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 (clutch)와 샤프트커플링 (shaft coupling) [유니버설조인트 (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3.10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과 크랭크(crank)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3.2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3.3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3.40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과 그 밖의 변속기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3.50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 [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3.60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 [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3.9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4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 (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10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4.2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 (wafer) · 반도체디바이스 · 전자집적회 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10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6.40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6.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전기접속자· 절연체·코일·접촉자 또는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87.1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 (blad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48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10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2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류 전동기, 직류 발전기	
		8501.31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2	출력이 750 와트를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3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1.34	출력이 3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40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다상(多相) 교류 전동기	
		8501.51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2	출력이 750 와트를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3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교류 발전기	
		8501.6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4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 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	
		8502.1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1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1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2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발전세트	
		8502.31	풍력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40	회전변환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3	8503.00	부분품(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4.10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유입식 변압기	
		8504.21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2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3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변압기	
		8504.31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2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3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4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40	정지형 변환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50	그 밖의 유도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 (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11	금속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5.20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		일차전지	
		8506.10	이산화망간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6.3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6.40	산화은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6.50	리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6.60	에어징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6.80	그 밖의 일차전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7.20	그 밖의 연산(鉛酸)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7.30	니켈-카드뮴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7.40	니켈-철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7.5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7.80	그 밖의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08		진공청소기	
			전동기를 갖춘 것	
		8508.11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60	그 밖의 진공청소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7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08 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09.4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		면도기·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510.10	면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20	이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30	모발제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 및 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1.10	점화플러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2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 마그네틱 플라이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30	배전기, 점화코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40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50	그 밖의 발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 (제 85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와 제무기(demister)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1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2.2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2.30	음향신호용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5 퍼센트 이상일 것
		8512.40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와 제무기(demi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5 퍼센트 이상일 것
		85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 · 축전지 · 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12 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8513.10	전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 (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4.10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4.20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노(爐)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4.3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4.40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 또는 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magnetic pulse)식 또는 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뿔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뿔질용이나 납땜용기기	
		8515.11	납땜용 인두와 건(gu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8515.21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금속의 아크[플라즈마 아크(plasma arc)를 포함한다] 용접기기	
		8515.31	자동식이나 반자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전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 (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와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 (제 854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10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전기난방기기와 전기토양가열기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6.21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전기가열식 이용기거나 손 건조기	
		8516.31	헤어드라이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2	그 밖의 이용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3	손 건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40	전기다리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5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60	그 밖의 오븐, 쿠키 · 조리판 · 보일링링 · 그릴러 및 로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8516.71	커피 또는 차를 끓이는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6.72	토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80	전열용 저항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또는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 8443 호· 제 8525 호·제 8527 호 또는 제 8528 호의 송신용 또는 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11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7.18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또는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8517.61	기지국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 및 송신용 또는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 (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7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 및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8.21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2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3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40	전기 가청주파증폭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50	전기 음향증폭세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519.20	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3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50	전화응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기기	
		8519.81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1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 (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8521.10	마그네틱 테이프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2		제 8519 호나 제 8521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2.10	픽업 카트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 (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 (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 37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자기식 매체	
		8523.21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광학식 매체	
		8523.41	기록이 안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반도체 매체	
		8523.51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2	스마트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8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거나 음성기록기기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 없다),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50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80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8526.10	레이더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526.91	항행용 무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92	무선원격조절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27.12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13	그 밖의 기기(음성기록기기나 음성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 으로서 외부 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21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527.91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2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또는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음극선관 모니터	
		8528.4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모니터	
		8528.5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프로젝터(projector)	
		8528.6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또는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28.71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제작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3	기타(단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9		부분품(제 8525 호부터 제 8528 호 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 주차장용·항만용 또는 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 또는 교통관제기기 (제 8608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0.10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1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 · 사이렌 · 표시반 ·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 8512 호나 제 85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20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		축전기[고정식 · 가변식 또는 조정식 (프리셋)으로 한정한다]	
		8532.1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고정식 축전기	
		8532.21	탄탈륨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2.22	알루미늄 전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2.23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2.24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2.25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2.30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셋) 축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1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 (컴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고정식 저항기	
		8533.2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권선(捲線) 가변저항기 [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8533.3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3.40	그 밖의 가변저항기 [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4	8534.00	인쇄회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 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 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10	퓨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자동차단기	
		8535.21	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30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40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 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 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 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	
		8536.10	퓨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20	자동차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3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계전기(繼電器)	
		8536.41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50	그 밖의 개폐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램프홀더·플러그와 소켓	
		8536.61	램프홀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6.70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6.9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 (基盤)(제 8535 호나 제 8536 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 90 류의 기기와 수치 제어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 8517 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537.20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		부분품(제 8535 호 · 제 8536 호 또는 제 853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10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7 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		전기식의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 [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9.1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필라멘트 램프(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는제외한다)	
		8539.21	텅스텐 할로겐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9.22	기타(전력이 200 와트 이하 전압이 1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31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9.32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8539.41	아크램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3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예: 진공관 또는 증기나 가스를 봉입한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0.11	천연색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40.12	단색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40.2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 (photocathode tub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40.4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 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40.60	그 밖의 음극선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마이크로웨이브관 [예:자전관(magnetron)·속도변조관 (klystron)·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카시노트론(carcinotron)]. 다만, 그리드(grid) 제어관은 제외한다.	
		8540.71	자전관(magnetro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40.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관	
		8540.81	수신관이나 증폭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8540.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	
		8540.91	음극선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54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10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8541.21	전력 낭비율이 1 와트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54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541.30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과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541.50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541.6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		전자집적회로	
			전자집적회로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 ·클록(clock)과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2	메모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3	증폭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 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3.10	입자가속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20	신호발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3.30	전기도금융·전기분해용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7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 (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권선(捲線)용 전선	
		8544.11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2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 또는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60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70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 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전극	
		8545.11	노(爐)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20	브러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6.10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20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8546 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 (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547.1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2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8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8.10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완전생산기준
		854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7 부 차량 · 항공기 ·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86			제 86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 ·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 (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거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8601.1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1.2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 탄수차(炭水車)	
		8602.10	디젤 전기기관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3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 8604 호의 것은 제외 한다)	
		8603.1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6.04	8604.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예:공작차(workshop) · 기중기차(crane) · 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 · 트랙라이너(trackliner) · 검사차 및 궤도검사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5	8605.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 · 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 [자주식(自走式)과 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 [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8606.1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3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8606.91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92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보기(bogie) · 비셀보기(bissel-bogie) · 차축 및 차륜과 이들의 부분품	
		8607.11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607.12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607.21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30	축과 그 밖의 연결장치·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8607.91	기관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8	8608.00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안전용 또는 교통관제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6.09	8609.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7			제 87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		트랙터(제 8709 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	보행운전형 트랙터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30	무한궤도식 트랙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0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		10 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2.1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90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제 8702 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	설상(雪上)주행용으로 특수 설계제작 된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차량(왕복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의 것 으로 한정한다]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		화물운송용자동차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 으로 한정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8704.2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2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고 20 톤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4.23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는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8704.3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32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는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90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예: 구난차(breakdown lorry) · 기중기차 (crane lorry) · 소방차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 도로청소차 · 살포차 · 이동공작 차 · 이동방사선차]	
		8705.10	기중기차(crane lorry)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2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30	소방차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4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90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6	8706.00	엔진을 갖춘 새시(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 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 8701 호 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10	제 8703 호의 차량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 한다)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21	안전벨트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2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30	제동장치,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과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7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 [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2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4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 및 운전박스,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		공장 · 창고 · 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차량	
		8709.11	전기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0	871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 [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과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 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사이드카(side-car)를 부착 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8711.1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2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를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30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를 초과하고 5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40	실린더용량이 500 시시를 초과하고 8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50	실린더용량이 800 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90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2	8712.00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의 기계 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	
		8713.1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7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 8711 호부터 제 8713 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4.10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2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714.91	프레임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2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3	허브(hub)[코스터 브레이킹허브 (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및 프리휠(free-wheel) 스프로킷 휠(sprocket-wheel)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4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 (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 한다] 및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5	안장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14.96	페달과 크랭크기어 (crankgear) 및 이들의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5	8715.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 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8716.1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 또는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2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31	탱커 트레일러 (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 (tanker semi-trailer)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39	기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4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80	그 밖의 차량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90	부분품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			제 88 류 항공기,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8.01	8801.00	기구와 비행선, 글라이더 · 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2		그 밖의 항공기(예:헬리콥터 · 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과 서보비틀(suborbital) 및 우주선 운반로켓	
			헬리콥터	
		8802.11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2.12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2.2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2.3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2.6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과 서보비틀(suborbital) 및 우주선 운반로켓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3		부분품(제 8801 호나 제 8802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3.10	프로펠러와 로터(rotor)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3.20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8.04	8804.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a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5.10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지상비행 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8805.21	모의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8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89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		순항선 · 유람선 · 페리보트(ferry-boat) · 화물선 · 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8901.10	순항선 ·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20	탱커(tanker)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30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2	8902.00	어선,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		요트와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10	인플랫터블(inflatable) 식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903.91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92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4	8904.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s craf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舢舨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8905.10	준설선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6		그 밖의 선박(군함 및 노를 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6.10	군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7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 탱크·코퍼댐(coffer-dam)· 부잔교(landing stage)·부표 및 수로부표]	
		8907.10	인플랫터블(inflatable) 식 부교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89.08	8908.00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 (해체용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8 부 광학기기· 사진용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 검사기기·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품				
90			제 90 류 광학기기 · 사진용 기기 · 영화용 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 8544 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 (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 ·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9001.10	광섬유 · 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1.20	편광재료 (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1.30	콘택트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1.40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1.5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 프리즘 ·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대물렌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02.11	카메라용·영사기용 또는 사진 확대기용이나 사진 축소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20	필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3		안경·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이들의 부분품	
			테와 장착구	
		9003.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3.1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4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4.10	선글라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5		쌍안경·단안경·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그 장착구 (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9005.10	쌍안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5.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5.9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06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 8539 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6.10	인쇄제판용 사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30	수중촬영용 · 공중측량용 또는 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 법정비교용 사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40	즉석인화 사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사진기	
		9006.51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 (viewfinder) [싱글렌즈리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 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2	기타(폭이 35 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3	기타(폭이 35 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9006.61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과 부속품	
		9006.91	카메라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07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007.10	촬영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7.20	영사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분품과 부속품	
		9007.91	촬영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7.92	영사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8		투영기·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 (영화용은 제외한다)	
		9008.50	프로젝터, 확대기와 축소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08.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 (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9010.10	롤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또는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0.5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現像室)용의 그 밖의 기기,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0.60	영사용 스크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0.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11		복합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9011.10	입체현미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20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80	그 밖의 현미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1.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기 (diffraction apparatus)	
		9012.1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기 (diffraction apparatu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2.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3.10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2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3.80	그 밖의 기기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13.90	부분품과 부속품	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그 밖의 항행용 기기	
		9014.10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2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 [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8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4.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 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 또는 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 는 제외한다], 거리측정기	
		9015.10	거리측정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2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태코미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30	수준기(水準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40	사진측량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5.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6	9016.00	감량(感量)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17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7.10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20	그 밖의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30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와 제이지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7.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1	심전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14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18.2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주사기 · 바늘 · 카테터(catheter) · 케 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31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32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치과용 그 밖의 기기	
		9018.41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50	안과용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8.9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 · 산소 흡입기 · 에어로졸 치료기 · 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9019.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19.20	오존 흡입기 · 산소 흡입기 · 에어로졸 치료기 · 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20	902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 (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와 결합·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1.1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의치와 치과용품	
		9021.21	의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인조 인체 부분	
		9021.31	인조관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1.4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1.5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 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 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13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14	기타(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19	그 밖의 용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21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29	그 밖의 용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30	엑스선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9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23	9023.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4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4.10	금속재료 시험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4.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4.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25.11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5.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6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 9014 호·제 9015 호·제 9028 호 또는 제 9032 호의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26.10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6.20	압력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6.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6.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 · 굴절계 · 분광계 · 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 · 포로서티(porosity) · 팽창 · 표면 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 · 소리 또는 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27.1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2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30	분광계 · 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 (자외선 · 가시광선 ·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50	그 밖의 기기(자외선 · 가시광선 ·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7.90	마이크로톰(microtome),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		기체 · 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10	기체용 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28.20	액체용 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30	전기용 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8.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9		적산(積算)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제 9014 호나 제 901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29.10	적산(積算)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9.2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29.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 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 9028 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 · 엑스선 · 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9030.1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2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전압 · 전류 · 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30.31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32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30.33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39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 · 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 ·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 잡음전압계(psophome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기기	
		9030.82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84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0.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1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윤곽 투영기	
		9031.10	균형시험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1.20	테스트벤치(Test benc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광학식 기기	
		9031.41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31.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1.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2.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20	매노우스타트(manost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밖의 기기	
		9032.81	액압식이나 공기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2.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9032.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0.33	9033.00	제 90 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1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21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101.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 하되 제 91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21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102.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 (제 9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10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4	9104.00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05		그 밖의 클록(clock)	
			자명종시계	
		9105.1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벽시계	
		9105.2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105.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알리는 기기[예: 타임 레지스터(time-register)·타임레코더 (time-recorder)]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06.10	타임레지스터 (time-register), 타임레코더 (time-record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7	9107.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구동식	
		9108.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20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9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 (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09.10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휴대용 시계의 것	
		9110.11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 (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12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19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1.1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 (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 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11.80	그 밖의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2		클록(clock) 케이스 및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2.20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		휴대용 시곱줄·휴대용 시계밴드 및 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3.1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14.30	문자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40	지판과 브리지(brid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			제 92 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 하프시코드(harpsichord)와 그 밖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10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1.20	그랜드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2		그 밖의 현악기 (예: 기타 · 바이올린 · 하프)	
		9202.10	활을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2.05		관악기(예: 키보드 파이프 오르간 · 아코디언 · 클라리넷 · 트럼펫 · 백파이프)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과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은 제외한다]	
		9205.10	금관악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6	9206.00	타악기[예: 북 · 목금 · 심벌 · 캐스터네츠 · 마라카스(maraca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 · 기타 · 아코디언)	
		9207.10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2.08		뮤지컬박스 · 페어그라운드 오르간 (fairground organ) ·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 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 · 뮤지컬소(musical saw)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 콜 (decoy call), 휘슬 · 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9208.10	뮤지컬박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 카드 · 디스크 및 롤), 박절기 (metronom) · 소리굽쇠 및 각종 조율관(調律管)	
		9209.30	악기용 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209.91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92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209.94	제 9207 호 약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9 부 무기와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			제 93 류 무기 및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 · 피스톨 (pistol)과 제 9307 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1.10	포병 무기(예: 평사포 · 곡사포 및 박격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1.2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2	9302.00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 (제 9303 호 또는 제 93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과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과 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 (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303.10	총구장전 화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20	그 밖의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 (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30	그 밖의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 라이플(rif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4	9304.00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 · 공기총 또는 가스총 및 피스톨 · 경찰봉) (제 93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 9301 호부터 제 9304 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5.10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20	산탄총 또는 라이플(rifle)의 것 (제 930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305.91	제 9301 호의 군용 무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3.06		폭탄 · 유탄 · 어뢰 · 지뢰 · 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과 그 밖의 총포탄 및 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산탄총용 탄약과 그 부분품, 공기총 탄환	
		9306.21	탄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30	그 밖의 탄약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7	9307.00	검류 ·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0 부 잡품				
94			제 94 류 가구, 침구 · 매트리스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 및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 (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 9402 호의 것은 제외 한다)와 그 부분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401.10	항공기용 의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20	차량용 의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30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40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 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9401.51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61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401.71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80	그 밖의 의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 및 뒤로 젖힘과 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2.10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3.1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20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403.30	사무실용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40	주방용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50	침실용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70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등나무 · 버드나무 가지(osier) · 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9403.81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4.04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예: 매트리스 · 이불 · 우모이불 · 쿠션 · 푸프(pouff) 및 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404.1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매트리스	
		9404.21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2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30	침낭(sleeping ba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4.05		램프 및 조명기구 [서치라이트(searchlight) 및 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405.10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 또는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20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램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3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4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5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60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9405.91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405.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6	9406.00	조립식 건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			제 95 류 완구·게임용구 및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 ·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 및 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4.20	각종 당구용구와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30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 은행카드·토큰 또는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 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504.40	오락용 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50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 9504.30 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5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5.1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 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 (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 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폴(paddling pool)용품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9506.11	스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12	스키파스닝(ski-fastening) (스키바인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수상스키 · 서프보드(surf board) · 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9506.21	세일보드(sail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	
		9506.31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32	골프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40	탁구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테니스용 라켓 · 배드민턴용 라켓이나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506.51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공(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	
		9506.61	론테니스(lawn-tennis) 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62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7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506.91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7		뉘싯대·뉘싯바늘과 그 밖의 뉘시용구, 뉘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 (제 9208 호나 제 97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 또는 사격 용구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507.10	낙숫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7.20	낙숫바늘(낙숫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7.30	낙시 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 순회서커스· 순회동물원 및 순회극장 용품	
		9508.1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			제 96 류 잡품	
	96.01		가공한 아이보리(ivory)·뼈· 귀갑(龜甲)·뿔·가지진 뿔·산호· 자개 및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1.10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6.02	9602.00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 [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 또는 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 3503 호의 젤라틴은 제외 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		비·브러시(기계·기구 또는 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 모프(mop)와 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였으며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스퀴지 (squeegee) [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9603.1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 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래쉬 (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9603.21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6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30	회화용 붓 · 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40	페인트용 · 디스탬퍼(distemper)용 · 바니시(ve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50	그 밖의 브러시(기계 · 기구 또는 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4	9604.00	수동식 체와 어레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5	9605.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 · 바느질용 또는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		단추 ·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 스냅파스너(snap fastener) 및 프레스스터드(press-stud) · 단추의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9606.10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 스냅파스너(snap fastener) 및 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단추	
		9606.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2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30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9607.11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2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6.08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 96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8.10	볼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2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30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40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5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60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608.91	펜촉과 닙포인트(nib poin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9		연필(제 9608 호의 펜슬은 제외한다) · 크레용 · 연필심 · 파스텔 · 도화용 목탄 · 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9609.1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9.2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0	9610.0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1	9611.00	날짜 도장 · 봉합용 스탬프 또는 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6.12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9612.10	리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2.20	잉크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		담배ライター와 그 밖의ライター(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이들의 부분품(ライター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3.1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2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80	그 밖의ライタ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4	9614.00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와 시가홀더 또는 시가렛 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6.15		빗 · 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머리핀 · 컬링핀(curling pin) · 컬링그립(curling grip) · 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85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빗 · 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11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9616.1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6.20	화장용 분첩과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7	9617.00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6.18	9618.00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9	9619.00	위생 타월(패드) 및 탐폰(tampon), 유아용 냅킨 및 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1 부 예술품 · 수집품과 골동품				
97			제 97 류 예술품 · 수집품과 골동품	
	97.01		회화 · 데생과 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 4906 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1.10	회화 · 데생과 파스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2	9702.00	오리지널 판화 · 인쇄화 및 석판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3	9703.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4	9704.00	우표 또는 수입인지 · 우편요금 별납증서 · 초일(初日)봉투 · 우편엽서류 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 4907 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7.05	9705.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6	9706.00	골동품(제작 후 100 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